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2023. 7.



I. 추진배경	1
II. 추진근거 및 평가체계	2
III. 평가결과	3
IV.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9
1. 지방의원 연구단체 활동 책임성 확보	9
2. 지방의원 징계 실효성 제고	20
3. 지방의원 외유성 국외출장 차단	31
4. 지방의원 국내 출장비 부정수령 방지	43
5.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투명성 제고	49
6.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무제한 연임 방지	58
7. 공용차량 관리 강화	61
8. 지방공무원 출장비 부정수령 방지	69
9.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공정성 확보	75
10. 포상 대상자 적격성 제고	83
11. 정책연구용역 관리 강화	89
12. 금고 지정·운영 투명성 제고	95
13.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공정성 제고	103
14. 지방행정동우회 보조금 누수 차단	110
15.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심의 공정성 확보	117
16.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정기준 명확화	121
17.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책임성 강화	125
18. 시·도립 예술단 채용·운영 공정성 제고	130
19.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우선계약자 선정기준 명확화	138
20.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142
21. 기업 및 투자 유치사업의 공정성 제고	152
22. 우수기업인 등 선정기준 명확화	157
23. 지역축제·행사 지원 적정성 제고	160
V.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기한	165

I. 추진배경

□ 지방자치단체 기능·권한의 확대에 따라 부패 발생 가능성도 증대

- 기능·권한 확대에 따른 적절한 통제장치 미흡으로 자치법규 속 부패 요인의 관행화·장기화로 인해 지방경제 활성화가 저해될 우려
- 사후 적발·처벌에 중점을 두는 소극적 부패통제로는 구조적 취약 분야의 부패 발생의 방지에 한계

- 지자체장·지방의원 이해충돌 심각...출장비 부당수령 49억 환수도('22.06.22, 국제신문)
- 지방의원, 지자체와 부적절 수의계약 속출...징계 '미미'('22.06.23, 울산제일일보)
- 과태료 감면해 돈 챙기고 조카 채용 청탁, 지자체·지방의회 비리 적발('22.04.28, 파이낸셜뉴스)
- '비리의 뒷'된 지자체장 부동산 인·허가권('21.10.13, 이데일리)
- 의장이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없이 ◎◎시의회 예산 심의·의결에 참여('22.04.20, 감사원)

□ 지방자치단체의 고질적 부패행위에 대한 근원적 진단·처방 요구

- 법령이나 공공기관 사규 평가에 비해 단편적인 수준에서 그치던 자치법규에 대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부패영향평가 필요
- 상위법령 기준 초과 등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규제 개선도 필요

"우리 경제의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 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

- '22.6.21, 국무회의 시 대통령 말씀 -

□ 자치법규에 숨겨진 부패·불공정·규제를 유발하는 규정 개선 필요

-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내재하는 각종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해 개선하는 등 지자체의 사전예방적 부패방지체계 확립
- 불합리하고 부당한 규제성 규정으로 인해 불공정·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의 권익침해로 작용하는 부패요인 적극 발굴·개선 추진

II. 추진근거 및 평가체계

□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의 부패유발요인을 평가해 단체장에게 개선권고 가능

* 적용기관 : 243개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226개(시 75개, 군 82개, 구 69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 평가방법

- (기초조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 조사해 평가 효율성 제고
 - 지자체별 실태,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결과, 지방의회 지적사항, 지역언론 보도이슈, 부패성 민원사례 등 각종 자료수집·검토
- ※ '22년도 '79개 지자체의 개선권고 사례'에 따라 평가대상기관 자체적으로 사전점검하게 하고, 그 결과를 중심으로 반영여부 검토
- (세부평가) 12개 평가기준에 따라 자치법규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 발굴 및 평가 실시
 - 지방의회, 재정, 민간위탁 등 지자체의 부패유발 가능성이 많은 규정을 중심으로 우선 분석·검토하고, 필요시 기관 방문 점검 병행
 - 지역 부패·비리, 불공정을 유발하는 규제를 현안과제로 발굴·평가하고 관련 지자체의 유사 자치법규 일괄 개선
 - 점검시 발굴된 특정 지자체의 개선안 우수사례는 다른 지자체에 전파하여 공유하고 권고안에 적극 반영

Ⅲ. 평가 결과

1. 평가결과 요약

□ 평가대상

- 17개 광역지자체 소관 현행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예규)

〈 자치법규 현황 〉

(단위 : 개)

구분	계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계	18,030	13,181	2,646	1,697	506
서울	1,105	813	249	31	12
부산	1,099	862	116	91	30
대구	932	627	159	105	41
인천	1,057	770	176	79	32
광주	1,133	815	154	119	45
대전	973	692	134	133	14
울산	888	655	125	89	19
세종	861	650	115	79	17
경기	1,464	1,138	214	85	27
강원	982	678	157	111	36
충북	824	579	115	108	22
충남	1,174	849	161	140	24
전북	1,047	758	151	107	31
전남	1,152	844	152	125	31
경북	1,039	745	137	121	36
경남	1,026	746	140	93	47
제주	1,274	960	191	81	42

□ 평가결과

- 지방의회, 기관 운영, 사업추진 등 3개 분야에서 23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436건의 개선 권고사항 도출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유형	문 제 점	개 선 방 안
지 방 의 회	1. 지방의원의 연구단체 활동 통제 미비 ○ 의원으로만 구성된 의회운영위에서 정책연구용역 심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심의 미배제 등으로 용역발주 특혜, 부당한 사익추구 등 부패 발생 소지 ○ 활동내역, 연구활동비 사용현황 등 단체 운영에 대한 관리가 미비하여 사적 모임으로 변질될 우려 ○ 연구활동 종료 후 사후관리가 부실하여 결과물 품질 및 활용도 저해	1. 지방의원의 연구단체 활동 책임성 확보 ○ 연구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 심의에 외부전문가 참여 보장 및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마련 ○ 연구활동비 목적 외 사용 금지 명시 및 부정 사용 시 환수·징계 등 제재 기준 마련 ○ 연구활동 결과물* 제출 및 보고서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 예산사용내역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용역보고서
	2. 지방의원 비위행위 제재 미비 ○ 징계대상 비위행위를 검직 위반 등 일부만 규정하고 위반행위별 징계 기준도 미흡해 제재 실효성 부족 ○ 윤리심사자문위 심의 시 공무원 참여,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이해 충돌방지 미흡 등으로 신뢰성 저해	2. 지방의원 징계 실효성 제고 ○ 징계대상 위반행위 확대* 및 위반 행위별 징계기준 마련 *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조례 위반 등 ○ 윤리심사자문위 심의에 공무원 참여 금지 및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개선
	3. 지방의원 국외출장 타당성 검증 미흡 ○ 자의적 출장심사 생략기준 운영, 출장 제한 미흡, 사전심사기준 부재 등으로 외유성 출장에 대한 사전통제 취약 ○ 의장이 추천한 민간위원 위촉, 출장 당사자인 의원 심의 참여 등 출장심의 공정성 미비 ○ 출장목적·계획과 다르게 지출된 경비에 대한 환수 규정 미비로 재정 누수 방지	3. 지방의원 외유성 국외출장 차단 ○ 자의적 출장심사 생략기준·출장 제한 기준 명확화 및 출장 타당성 검증을 위한 구체적 사전심사 기준 마련 ○ 민간위원 위촉방식 변경(외부추천), 심의 원인 의원이 출장당사자인 경우 심의 배제 ○ 부당 지출된 출장경비 환수 의무화
	4. 지방의원 출장비 부정수령 차단 미흡 ○ 출장비 부정 수령 시 환수 규정이 없어 재정누수 방지	4. 지방의원 국내 출장비 부정수령 방지 ○ 부정 수령 시 부정 수령액의 5배 가산 징수 규정 마련

지 방 의 회	○ 근무지내 출장 시 교통비·식비 지급 (일비만 지급 원칙)	○ 근무지내 출장 시 식비·교통비 지급 폐지
	5.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사용 관리 부실 ○ 법령에 어긋나는 집행기준 운영 및 부당사용에 대한 제재 미흡 등으로 업무추진비를 방만하게 운영 ○ 업무추진비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 시스템 미비	5.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투명성 제고 ○ 법령에 부합하도록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정비 및 부당사용 시 환수·징계 등 제재기준 마련 ○ 의원대상 교육 및 사용내역 주기적 점검 의무화
기 관 영	6.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과도한 장기 연임 가능 ○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에 대한 임기 제한이나 재위촉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과도한 기득권 부여	6.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무제한 연임 방지 ○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 마련
	7. 공용차량 관리 체계 미흡 ○ 임차차량 정수관리 불분명, 정수 및 운영 현황 공개 미흡, 승용차간 차종(용도) 변경 허용 등 행정편의적 차량 관리	7. 공용차량 관리 강화 ○ 임차차량 정수관리 대상으로 명시 및 정수·운영 현황 홈페이지 공개, 승용차간 차종(용도) 변경 제한
기 관 영	8. 지방공무원 출장비 부정수령 관행화 ○ 부정수령 시 가산·징수 범위 축소(5배 → 2배), 출장비 정액지급 등 법령에 어긋나는 여비규정으로 인해 허위출장 및 출장비 부정수령 방지 곤란	8. 지방공무원 출장비 부정수령 방지 ○ 부정수령 가산·징수 범위 확대(2배 → 5배) 및 운임·숙박비 지급방식 변경(정액→실비)
	9. 세입징수 포상금 객관성·공정성 미흡 ○ 징수실무와 무관한 관리자급을 포상 대상으로 규정 및 '특별한 공적' 등 자의적 해석과 재량남용이 우려되는 불명확한 포상기준으로 인해 객관성 상실 ○ 공적심사위를 내부 공무원으로만 구성하여 심사의 공정성 미흡 ○ 부정수령 시 환수규정 부재, 불공정한 이자가산 규정* 등으로 인해 재정누수 및 행정신뢰 저하 * 행정착오 환수 시 포상받은 자가 이자 부담	9.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공정성 확보 ○ 관리자급(4급, 과장)은 포상금 지급 대상 제외 및 불명확한 포상기준 구체화·명확화·구체화 ○ 공적심사위 외부위원 참여 보장 ○ 포상금 부정수령 시 환수 규정 및 이자가산 규정 개선

기 관 운 영	10. 부적격자 포상 제외 미흡 ○ 공적심사 임의적 생략 및 성범죄·음주운전 등 포상제한 규정의 부재 등으로 부적격자 검증·배제 곤란 ○ 거짓·부정한 방법 등 부적격자 포상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미흡하여 포상 영예성 훼손	10. 포상 대상자 적격성 제고 ○ ‘특별한 경우’ 등 공적심사 임의적 생략기준 개선 및 부적격자 포상 제한 규정 마련 ○ 거짓·부정한 방법에 의한 포상취소 절차 마련 및 포상취소가 재량인 경우 당연취소로 개선
	1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책임성 미비 ○ 연구용역심의위 구성·운영 시 외부위원 참여 미보장,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미흡 등 심의 공정성·객관성 부족 ○ 연구부정행위 등 용역평가 결과가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한 재재가 없어 용역 부실화 우려	11. 정책연구용역 관리 강화 ○ 외부위원 참여 보장,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개선 ○ 용역 결과가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해 불이익부과 등 제재 규정 마련
	12. 금고 지정·운영 시 공정성 미비 ○ 금고지정심의위 위원 구성 시 민간위원 과반수 미만 구성, 이해관계자 위촉 제한 및 심의배제 규정 부재 등 심의위 구성·운영 공정성·객관성 미흡 ○ 금고지정 절차 중 의무사항인 금고지정 공고 통지 및 평가기준 교부·열람을 재량으로 규정하여 선별적 정보제공 등 특혜 발생 소지 ○ 협력사업비* 공개 미흡으로 예산 편성·집행의 투명성 저해 *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입찰 시 지자체에 출연 또는 지원하기로 한 현금	12. 금고 지정·운영 투명성 제고 ○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 이해관계자 위촉 제한 및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마련 ○ 금고지정에 관한 공고 통지 및 평가기준 교부·열람을 의무적 절차로 개선 ○ 협력사업비 총액 공개 및 세입예산 편성내역·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
	13.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기본조례 미비 ○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심의배제 미흡, 직무상 비위자 해촉 규정 부재 등 기본조례로서 미흡	13.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공정성 제고 ○ 제척·기피·회피 규정 강화 및 부적격위원 해촉 규정 보완
	14. 퇴직자단체에 과도한 보조금 지원	14. 지방행정동우회 보조금 누수 차단

- 법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외에 포괄적으로 지원대상을 추가 규정하여 청탁에 의한 특혜 우려
- 재정지원은 사업비로 한정되어 있음에도 단체 운영비를 지원하여 법률위반 및 재정 누수 발생
- 보조금 부정수령 시 환수 규정이 없거나 재량으로 규정하여 재정누수 방지

15.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심의 시 이권 개입 방지 미흡

- 미술작품설치 심의위 위원 장기연임 허용 및 임기 중 본인작품 출품을 제한하지 않아 사익추구 등 부패발생 우려

16. 기준 미비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비용 산정에 과도한 재량 부여

- 법령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행정청 재량에 따른 특혜발생 소지

17.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 소극적 운영

-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하여 소극행정 유발
-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준공된 공사는 제외하여 제도 취지 및 신고 활성화 저해

18. 사도립 예술단 채용·운영에 과도한 재량 부여

- 지휘자 등 직책단원을 추천방식으로 채용하고 단원채용 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하여 재량남용 및 사적 채용 우려
- 예술단 운영위 및 채용 전형위원회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미흡

19.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자 선정 공정성 미흡

- 우선계약 신청자가 복수인 경우 우선순위 기준이 없거나 모호하게 규정하여 공정성 미흡

- 법정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외 조례로 추가 규정한 지원대상 사업 삭제

- 운영비 지원 규정 삭제

- 보조금 의무적 환수 규정 마련

15.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심의 공정성 확보

- 위원의 연임 제한 및 임기·위촉 기간 중 본인 작품 출품 제한 규정 마련

16.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정기준 명확화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17.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책임성 강화

-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확대
- '준공이 완료된 건설공사'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18. 사도립 예술단 채용·운영 공정성 제고

- 직책단원을 공개 모집하도록 채용방식 개선 및 단원 채용사유 중 불명확한 규정 삭제
- 운영위원회 위원 및 전형위원회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마련

19.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우선계약자 선정기준 명확화

- 우선계약 신청자에 대한 명확한 우선순위 기준 마련

사
업
추
진

- 우선순위가 같은 사람이 복수인 경우 우선계약자 선정기준 부재로 특혜 발생 소지

20.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및 관리·감독 부실

- 수탁자선정위 내부위원 위주 구성 및 위원자격요건 불명확, 이해충돌방지 미흡 등 수탁자 선정 공정성 미흡
- 예산·시설 등 목적외 사용 방지 미흡, 감사 부실 등 수탁기관 책임성 확보 미약

21. 기업 및 투자유치 심의 공정성 미흡

- 투자유치위 위원 자격기준·결격사유 및 해촉 규정 부재, 이해충돌방지 미흡 등으로 위원회 공정성 저해

22. 우수기업인 선정 공정성 미흡

-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같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우수기업인 선정기준을 규정하여 재량 남용 우려

23. 무분별한 지역 축제·행사 난립

- 지역축제심의위 외부위원 참여 미보장, 부적격자 배제 및 이해충돌방지 미흡 등 심의위 구성·운영 공정성 미흡

- 우선순위가 같은 사람이 복수인 경우 우선계약자 선정기준 마련

20.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 외부위원 과반수 구성 및 구체적 자격 요건 명시,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개선
- 위탁 시설·비용 목적외 사용 금지 등 수탁기관 의무사항 규정 및 주기적 감사 의무화

21. 기업 및 투자유치 사업의 공정성 제고

- 내·외부위원 자격 및 위·해촉 기준 마련,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개선

22. 우수기업인 등 선정기준 명확화

- 불명확한 우수기업인 등 선정기준 삭제 또는 구체화

23. 지역 축제·행사 지원 적정성 제고

- 외부위원 과반수 참여 보장, 부적격 위원 해촉 및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제척·기피·회피 개선

IV.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 지방의원 연구단체 활동 책임성 강화

평가대상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등

■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제4조(위원회의 심의) 연구단체와 관련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 과제 심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지원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연구활동비 집행 등)

-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 이외의 항목으로 연구활동비를 집행할 수 없다.
- ③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의원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13조(연구활동결과보고서 제출 등) 경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원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지원받은 경비의 사용 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제출 규정 없음

□ 평가기준 : 재정누수 가능성, 공개성,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정누수 가능성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 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 현황

- 각 시·도 의회는 의원의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

※ '22. 6월 기준 17개 광역의회에서 167개 의원연구 단체*가 활동

* 조례입법, 시정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지방의회에 등록된 단체

- 행안부는 '20년에 지방의회의원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 지원을 위해 의원정책개발비를 신설했고, 각 지방의회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 지원
- 연구단체·모임의 등록·취소, 연구활동계획 승인, 연구과제 심의, 연구활동비 지급 등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심의·심사를 위한 위원회 운영

□ 문제점

- ① 정책연구용역은 일반 연구활동 대비 예산 규모가 크고, 용역 수행기관 선정 등에 부패 개입 여지가 많아 용역과제 추진의 필요성·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요구됨에도
 - 경남도의회 등 7개 시·도의회는 외부위원 없이 의회의원으로만 구성된 의회운영위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어 용역과제 선정 및 추진 과정에 의원의 부당개입, 특혜 등 부패 발생 가능성 존재
 - 전북도의회 등 3개 도의회는 별도 심의위원회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나, 위원구성 규정이 조례에 없거나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자의적·편의적으로 운영될 소지
 - 대전시의회는 정책연구용역을 포함해 연구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가 없이 의장이 정하도록 하여 연구활동의 적정성

·타당성 등 확보 수단이 부재

- ② 연구활동에 관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연구계획·정책연구용역 승인, 연구비 지급·조정, 활동결과 평가 등을 심의하므로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나

- 17개 시·도 모두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규정이 없거나 미흡하여 심의과정에서 위원의 사익추구 통제 불능

- ③ 연구활동비는 정책연구용역 수행,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세미나·토론회·간담회 등 연구활동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을 금지하고 목적 외 사용 등 부당 사용 시 환수를 반드시 해야 함에도

- 서울시의회를 제외한 16개 시·도의회는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부당 사용 시 환수 규정이 없거나 미흡하고, “부당 사용 시 회수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정해 재정 누수를 방지할 우려

- ④ 연구활동에 대한 책임성 확보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연구활동이 종료되면 결과보고서 및 예산사용내역을 제출받고 결과보고서는 공개해야 함에도

- 강원도의회, 대전시의회는 연구활동 결과 및 예산사용내역 제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연구활동 부실화 및 예산 낭비가 우려
- 경기도의회 등 14개 시·도의회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용역보고서, 지출내역서 중 일부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실효성 미흡
- 강원도의회 등 15개 시·도의회는 연구활동 결과물 공개 규정이 없거나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외한 용역보고서만 공개하는 등 성과물의 환류 및 활용도 제고 미흡

〈 시·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규정 현황 〉

(× : 규정없음, △ 규정 미흡)

구분	지원 등 심의기구					목적의 사용 금지/환수	연구활동 결과	
	위원회	심의사항	위원구성		제척· 회피		보고· 제출	공개
			내부	외부				
강원도	지원 심의위	연구활동·연구용역 계획 심의· 조정, 연구활동·용역결과 평가 등	운영위 소속 의원	경험식견 갖춘 전문가	×	×	×	×
경기도	지원 심의위	연구계획·연구용역 승인·결과 평가 연구활동비 지원 등	운영위 소속 의원	대학교수 등 전문가, 시민 단체 관련 전문가	×	×	용역보고서	용역보고서
경남도	의회 운영위	연구활동계획 승인, 연구활동비 지원, 정책연구용역 과제 심의 등	-	×	×	△	결과보고서 지출내역서	×
경북도	정책 연구위	연구활동계획 승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연구활동비 지원 외부전문가 선정 위촉, 정책연구용역 계획 승인, 제안서 평가, 용역비 조정 등	각 상임위 추천 의원, 의장이 필요성 인정하는 의원	각 연구단체 대표가 추천 하는 외부전 문가	×	△	결과보고서 지출내역서	×
광주시	의회 운영위	연구활동계획 (변경)승인, 경비 지원, 정책연구용역 심의 등	-	×	×	△	결과보고서	×
대구시	의회 운영위	연구주제 적합성, 경비 지원 등	-	-	×	△	결과보고서 지출내역서	×
	정책연구 용역심의위	용역과제 심의	운영위 소속 의원	전문가·대학 교수 등	×		결과보고서	용역보고서
대전시	-	-	-	-	-	△	×	×
부산시	의회 운영위	연구활동계획 승인, 연구활동비 지원, 연구용역과제 선정 등	-	×	×	△	결과보고서 지출내역서	용역보고서
서울시	의회 운영위	연구활동계획 (변경)승인, 연구주제 조정, 연구활동보고서 채택, 연구비 지급 결정 회수 등	-	×	×	○	결과보고서 지출내역서 증빙서류	△
세종시	의회 운영위	연구과제 조정, 연구활동계획서 변경, 활동비 배분 회수 조정, 활동결 과활동비 정산 등	-	×	×	△	결과보고서 정산서	×
울산시	의회 운영위	연구활동계획 (변경)승인, 연구주제 조정, 연구활동보고서 채택, 연구활동비 지급결정 회수, 정책연구용역 심사 등	-	×	×	△	결과보고서	×
인천시	연구단체 운영심사위	연구활동계획 승인, 연구활동비 지원 등 *정책개발비는 의장이 지원	운영위 위원장· 부위원장	외부전문가, 각 상임위 추천 민간전문가	×	△	결과보고서 지출내역서	활동결과 보고서 용역보고서
전남도	의회 운영위	연구활동계획 승인, 연구활동비 조정, 연구활동 결과평가·공개 등	-	×	×	△	결과보고서	활동결과 보고서

구분	지원 등 심의기구					목적외 사용 금지/한수	연구활동 결과	
	위원회	심의사항	위원구성		제척· 회피		보고· 제출	공개
			내부	외부				
	정책연구 용역심의위	예정금액 5백만원 초과 정책 연구용역 계획	운영위소속 의원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			용역보고서
전북도	연구단체 운영심의위	연구활동계획 승인, 연구주제 조정 연구활동 계획서 변경, 연구활동 연구용역 계획 심의 조정, 연구활동비 지급 등 * 용역과제 : 전문기관 사전검토 의견요청	부위원장, 각 상임위 위원장 의회 사무처장 등	×	×	△	결과보고서 지출내역서 용역결과물	×
제주도	연구단체 지원평가위	2천만원 초과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등	의회운영위 위원장	지방의회·지방 행정 관련 학식 경험 풍부한 자	×	△	결과보고서	×
충남도	심의위 (의회운영 위가 대행)	연구과제 조정·연구활동계획서 변경, 연구활동비 배분 회수 조정, 연구활동결과·활동비 정산 등	-	×	△	△	결과보고서 정산서	×
충북도	심의위	연구활동계획 승인, 연구용역 승인, 활동비 지원 등 *연구용역은 전문기관 사전검토 의견 요청	의회운영위 위원장, 의원	×	×	×	결과보고서 용역결과물	×

< 언론 보도 >

◆ 임기말 제8대 ○○시의회 연구활동비 반납 논란(‘22.6.23, 연합뉴스)

- 네 군데는 연구활동비 사용명세를 제출했지만, 4개 단체는 연구활동비 사용명세를 담은 서류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비용을 반납하지도 않아.
- 연구활동비 논란의 핵심은 8대 시의회의 공식 임기가 이달 30일까지지만, 앞서 폐회일까지 한 마당에 남은 연구활동비를 집행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

◆ 기초의원 연구단체 예산은 ‘쌔짓돈?’(‘22.2.15, B tv)

- 기초의회 의원들은 정책개발이나 입법 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연구단체를 설립했는데 단체별로 한 해 수백 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효과는 의문
- ○○의회 연구단체는 4개, 결과보고서도 4장이 전부. ,, 지출한 금액은 280여만원, 이중 간담회 비용만 절반이 넘지만 간담회 내용이 무엇인지, 현장방문은 어디로 한 건지 내용이 없음
- ○○연구회 역시 3백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는데 연구활동비로만 180만원을 썼고, 자세한 내용은 역시 없음

◆ ‘보조금은 쌔짓돈?’... ○○ ○○구의회 연구단체, 예산 밥값에 써(‘20.7.5, 중부일보)

- 의원들 ○○○의원 식비 이용 지적, 이자 포함 전액 400만 405원 반납, ○의원

“교수들 자문 위해 만난 것”

- 상황이 이렇다 보니 ○○○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음. 최근 ○○○ 의원이 지자체 예산과 관련된 내용으로 박사 논문을 썼는데, 연구회 활동 목적과 계획이 비슷하기 때문
- ◆ ‘정책개발비 집행 기초의회 4곳’ 정책연구는 뒷전?(‘23.1.10, KBS 대구)
- 경북의 기초의회를 확인했더니 정책개발비를 활용하는 곳이 고작 4곳에 불과

□ 개선방안

①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심의 전문성·공정성이 확보되도록

- 경남도의회 등 7개* 시·도의회 및 전북도의회 등 2개** 도의회는 심의사항 중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심의는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도록 규정 개선

* 경남도의회, 광주시의회, 부산시의회, 서울시의회, 세종시의회, 울산시의회, 충남도의회

** 전북도의회, 충북도의회

- 대전시의회는 의원연구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외부위원 참여 규정 마련

②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심의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 17개 시·도의회는 심의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내·외부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규정 마련

③ 연구활동비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부당 사용 제재를 위해

- 서울시의회를 제외한 16개 시·도의회는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부당 사용 시 환수 규정을 신설하거나 임의규정인 환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선

④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책임성 확보 및 예산집행 투명성·활용도 제고 등이 확보되도록

- 강원도의회, 대전시의회는 연구활동이 완료되면 결과보고서, 용역보고서, 예산사용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마련
- 경기도의회 등 14개 시·도의회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용역보고서, 예산사용내역서 모두를 제출하도록 규정 보완
- 경남도의회 등 15개 시·도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용역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 개선

【자치법규안 1·2】 17개 시·도의회

현 행	개선안(예시)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제4조(위원회의 심의) 연구단체와 관련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신설> 1. 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 과제 심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지원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심의) 연구단체와 관련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u>다만, 제4호에 관한 심의는 관련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u> 1. ~ 5. (현행과 같음)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 < 신설 >	제○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u>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 연구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u> 1. 연구회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현 행	개선안(예시)
< 신설 >	2.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5.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회 활동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중 ○명 2.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등 전문가 중 ○명 3.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중 ○명 제○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개별 위원회의 제척 사유 추가 가능 ② 심의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자치법규안 3】 16개 시·도의회

현 행	개선안(예시)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 신설 >	제O조(연구활동비 집행 등)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하며, 연구단체 사업별로 지급한다.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외부의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 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③ <u>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u> ④ <u>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O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즉시 회수해야 한다.</u> ⑤ 의장은 연구단체 인원수,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자치법규안 4】 17개 시·도의회

현 행	개선안(예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13조(연구활동결과보고서 제출 등) 경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지원받은 경비의 사용 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설 >	제13조(연구활동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연구용역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용역 종료 후 30일 이내로 성과물</u>

현 행	개선안(예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 신설 >	(책자,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u>제14조(공개)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 및 위원회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용역 최종성과품을 광주광역시의회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사항은 그렇지 아니한다.</u>

[타 기관 우수사례 및 유사 입법례]

■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제8조(심의) ① 운영위원회는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에 따른 대구광역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단체 구성의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2항에 따른 연구주제의 적합 여부 및 연구단체의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보서에 작성하여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한다.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연구활동비 집행 등)

- ③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1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즉시 회수해야 한다.
- ⑤ 의장은 연구단체 인원수,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국회의원연구단체 지원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연구단체활동결과보고서”란 연구단체가 해당 연도에 수행한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사항의 종합적인 결과에 대하여 제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가. 연구활동: 연구목적과 관련된 세미나, 전시회, 간담회 등의 활동

나. 입법활동: 연구목적과 관련된 법률안 등의 발의 및 심사·심의에 따른 실적

다. 정책연구보고서: 연구목적과 관련된 주제로서 입법정책 제언을 포함하는 보고서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의장이 지명하는 국회부의장 1인
2. 각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1인
3. 국회사무총장
4.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의 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제12조(연구단체활동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해당 연도의 연구단체활동중간보고서는 6월 30일까지, 연구단체활동결과보고서는 12월 20일까지 각각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새로이 개시되는 연도에는 연구단체활동중간보고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는 연구단체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정책연구보고서, 연구활동비사용내역서, 그 밖에 입법활동, 연구활동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활동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 이외의 연구 등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연구활동비 지급중지 및 회수)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1.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연구단체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정책연구보고서를 2년 연속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활동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제18조(정보의 공개) 국회사무총장은 연구단체가 제출한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및 연구단체활동결과보고서 등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2. 지방의원 징계 실효성 제고

평가대상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회의규칙 등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6조(징계 등)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1. 기간 내에 검직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허위로 검직신고를 한 경우
3. 제14조제5항에 따라 검직 사임 권고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징계를 하는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별표2 징계기준(제16조제2항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근거
1. 검직신고 위반	가. 검직 불성실신고 (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의결 후 위반사실에 대한 통지를 2회 이상 받은 자)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제16조제1항제1호
	- 신고 지연, 변경신고 지연		
	나. 검직 허위신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제16조제1항제2호
	- 미신고, 허위신고		
	다. 검직 사임권고 불이행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16조제1항제3호

*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에 대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 규정 없음

■ 「전남도의회 회의규칙」

제10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6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전라남도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민간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자문위원들이 자문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③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 ④ 정당의 당원과 의원은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제107조(자문위원회의 운영)

- ④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자문위원회는 그 의결로 해당 자문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해촉, 기피·회피 없음

□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 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 현황

- 지방자치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법 및 자치법규 위반행위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 윤리특별위는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 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하고 윤리심사자문위 구성·운영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 지방의회는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회의 규칙 등에 지방의원 의무, 징계, 윤리심사자문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관련 법령 >

■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

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의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99조(징계의 요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지방의회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제95조제1항을 위반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지방의회의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의 의장은 제2항의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제101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문제점

① (징계대상·기준) 대부분 지방의회가 의원의 의무는 규정하면서 징계대상 위반행위를 일부만 규정하고,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이 없거나 미흡하여 자체징계를 통한 자정 기능을 기대하기 곤란

- 경기도의회 등 9개 시·도의회는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조례 위반 등을 윤리심사 또는 징계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징계기준은 없어 윤리심사·징계 실효성 미흡

- 부산시의회는 겸직신고 위반행위만 징계대상 및 징계기준을 규정
- 강원도의회 등 4개 시·도는 겸직금지·영리거래제한 등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기준만 있고,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이 없어 윤리심사 실효성 미흡
- 경남도의회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행위 중 일부만 징계기준을 두고 있어 윤리 위반행위 징계기준 미흡

〈 시·도의회별 의원 징계규정 현황 〉

구 분	관련 규정	징계대상 비위(위반) 행위	징계기준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19조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 위반	없음
광주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 위반	없음
대구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 위반	없음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4조*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 위반	없음
세종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 위반	없음
제주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7조*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 위반	없음
충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 위반	없음
충북도의회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윤리조례 위반, 지방자치법 제44조 위반, 겸직금지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없음
전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위반	없음
부산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6조	겸직신고 위반	겸직신고·겸직금지 위반
강원도의회	강원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제14조*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 위반	없음
	강원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제19조, 별표2	겸직금지·겸직신고 위반, 영리거래 금지 위반	겸직금지·겸직신고 위반, 영리거래 금지 위반
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4조*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 위반	없음

구 분	관련 규정	징계대상 비위(위반) 행위	징계기준
	같은 조 제9조	겸직금지·겸직신고 위반, 영리거래금·자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겸직금지, 겸직신고, 영리거래금·자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전시의의회	대전광역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4조*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 위반	없음
	같은 조례 제5조의3	겸직금지·겸직신고 위반, 영리거래금·자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겸직금지, 겸직신고, 영리거래금, 수의계약체결 제한
인천시의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4	겸직금지·겸직신고 위반, 영리거래금·자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겸직금지, 겸직신고, 영리거래금, 수의계약체결 제한
	같은 조례 제11조*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 위반	없음
경남도의의회	경상남도의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 위반	품위유지, 청렴의무, 영리거래 제한(수의계약체결 제한), 겸직금지, 겸직신고
	같은 조례 제9조	겸직금지·겸직신고 위반, 영리거래금·자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울산시의의회	울산광역시시의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6조*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 위반	품위유지, 청렴의무, 영리거래금, 겸직금지, 겸직신고 등 9개 유형
	같은 조례 제8조	겸직금지·겸직신고 위반, 영리거래금·자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전북도의의회	전라북도의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6조*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 위반	품위유지, 청렴의무, 영리거래, 겸직금지, 겸직신고 등 9개 유형
	같은 조례 제7조의4	겸직금지·겸직신고 위반, 영리거래금·자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조례 위반	

* 윤리심사 규정

② (자문위 구성·운영) 지방자치법상 윤리심사자문위 자문은 징계심사 전 의무적 절차이고 자문위 의견을 존중하도록 해 사실상의결에 구속력이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됨에도

- 17개 광역시·도 지방의회 모두 비적격 위원에 대한 해촉,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제척·기피·회피가 미흡해 공정성 확보에 한계
- 대부분 시·도의회는 위원 임기가 2년(1차례 연임)이나 충북도의회는 4년에 1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8년까지 위원 교체 없이 자문위가 운영되어 유착관계 형성에 따른 심사 관대화 등이 우려
- 서울시의의회, 세종시의의회는 윤리심사자문위 구성 시 민간위원 위촉이

어려운 경우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 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위원회 중립성이 훼손될 여지

※ 서울시의회·세종시의회는 행동강령 자문위 구성·운영 규정 준용

〈 시·도의회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규정 현황 〉

구 분	관련 규정	구성·운영
강원도의회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90조의3	기파·회피 없음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척·기파·회피 없음
경남도의회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해촉·기파·회피 없음
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08조·제110조	해촉·기파 없음
광주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6조·제7조	해촉·기파·회피 없음
대구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11조·제112조	해촉·기파 없음
대전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 조례 제3조	해촉 없음
부산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94조·제95조	해촉·기파·회피 없음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제91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2조제4항	기파·회피 없음 위원 중 공무원·의원 가능
세종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9조제3항, 제31조	위원 중 공무원·의원 가능 기파 없음
울산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91조의2	기파·회피 없음
인천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2	해촉·기파·회피 없음
전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106조·제107조	해촉·기파·회피 없음
전북도의회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81조의2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28조·제30조	해촉·기파 없음
제주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95조의2	해촉·기파·회피 없음
충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7조	기파·회피 없음
충북도의회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9조·제80조·제82조	임기 4년(1회 연임), 해촉·기파 없음

□ 개선방안

① 15개 시·도의회는 자체 징계를 통한 자정 기능이 작동하도록 징계 대상 위반행위 명시 및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 징계기준 마련

- 경기도의회 등 9개 시·도의회는 징계대상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마련
- 부산시의회는 겸직신고 위반 외 조례에서 정한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위반행위를 징계대상 행위로 추가하고 징계기준 마련

- 강원도의회 등 4개 시·도의회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
- 경남도의회는 갑질행위, 회피의무 등 징계기준에 반영되지 않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

② 17개 시·도의회는 윤리심사자문위의 공정성 및 중립성이 강화되도록 구성·운영 규정 개선

- 경남도의회 등 11개 시·도의회는 비적격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 마련, 17개 시·도의회 모두 제척·기피·회피 규정 개선
- 충북도의회는 4년으로 되어 있는 위원 위촉기간을 축소하거나 1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연임규정 삭제
- 서울시의회, 세종시의회는 민간위원 위촉 시 부득이한 경우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 참여를 허용하도록 한 준용 규정은 제외

【자치법규안 1】 경기도의회 등 15개 시·도의회

현 행	개선안(예시)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징계) 의원이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u>처리한다</u> .	제19조(징계) 의원이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u>처리하고, 징계기준은 별표에 따른다</u> .						
< 신설 >	[별표] 징계기준						
	<table><tr><th>비위 유형</th><th>비위 정도</th><th>적용기준</th></tr><tr><td>1. 품위유지</td><td>○ 음주운전 1) 면허정지 2) 면허취소 3) 2회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td><td>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td></tr></table>	비위 유형	비위 정도	적용기준	1. 품위유지	○ 음주운전 1) 면허정지 2) 면허취소 3) 2회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비위 유형	비위 정도	적용기준					
1. 품위유지	○ 음주운전 1) 면허정지 2) 면허취소 3) 2회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현 행	개선안(예시)																												
	<table> <tr> <td>음주운전을 한 경우 5)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td><td>출석정지, 제명</td></tr> <tr> <td>○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td><td>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td></tr> <tr> <td>○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 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td><td>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td></tr> <tr> <td>○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 유출</td><td>경고, 공개사과</td></tr> <tr> <td>○ 성폭력, 성희롱</td><td>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td></tr> <tr> <td>2. 청렴의무 ○ 탈세 ○ 면탈 ○ 금품수수</td><td>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td></tr> <tr> <td>1) 직무와 관련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고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2) 직무와 관련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고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td><td>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출석정지, 제명</td></tr> <tr> <td>3. 양자택일 금지 (수익계약 체결 제한 위반) ○ 영리거래금지 위반 ○ 수익계약 체결 제한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익계약 체결 제한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td><td>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td></tr> <tr> <td>4.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자비자비법」 제8조제4항 겸직시임 권고 불이행</td><td>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td></tr> <tr> <td>5. 겸직금지 ○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 금지 위반</td><td>공개사과, 출석정지 (상임위원회 변경)</td></tr> <tr> <td>6. 회피의무 ○ 회피의무 위반</td><td>경고, 공개사과</td></tr> <tr> <td>7.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공개 위반</td><td>공개사과</td></tr> <tr> <td>8. 회의불참 ○ 회기당 3회 이상</td><td>경고, 공개사과</td></tr> <tr> <td>9. 갑질행위 ○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의원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td><td>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td></tr> </table>	음주운전을 한 경우 5)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출석정지, 제명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 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 유출	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2. 청렴의무 ○ 탈세 ○ 면탈 ○ 금품수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1) 직무와 관련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고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2) 직무와 관련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고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출석정지, 제명	3. 양자택일 금지 (수익계약 체결 제한 위반) ○ 영리거래금지 위반 ○ 수익계약 체결 제한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익계약 체결 제한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자비자비법」 제8조제4항 겸직시임 권고 불이행	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겸직금지 ○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 금지 위반	공개사과, 출석정지 (상임위원회 변경)	6. 회피의무 ○ 회피의무 위반	경고, 공개사과	7.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공개 위반	공개사과	8. 회의불참 ○ 회기당 3회 이상	경고, 공개사과	9. 갑질행위 ○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의원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음주운전을 한 경우 5)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출석정지, 제명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 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 유출	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2. 청렴의무 ○ 탈세 ○ 면탈 ○ 금품수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1) 직무와 관련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고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2) 직무와 관련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고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출석정지, 제명																												
3. 양자택일 금지 (수익계약 체결 제한 위반) ○ 영리거래금지 위반 ○ 수익계약 체결 제한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익계약 체결 제한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자비자비법」 제8조제4항 겸직시임 권고 불이행	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겸직금지 ○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 금지 위반	공개사과, 출석정지 (상임위원회 변경)																												
6. 회피의무 ○ 회피의무 위반	경고, 공개사과																												
7.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공개 위반	공개사과																												
8. 회의불참 ○ 회기당 3회 이상	경고, 공개사과																												
9. 갑질행위 ○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의원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자치법규안 2】 17개 시·도의회

현 행	개선안(예시)
「대전광역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 조례」 제 3조 (구 성) ① ~ ② (생 략) < 신 설 >	제 3조 (구 성) ① ~ ② (현 행 과 같 음) ③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현 행	개선안(예시)
	<u>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u>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신 설 >	<u>제00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u> <u>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u> <u>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u> <u>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u> <u>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u> <u>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u> <u>③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u>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 9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임기) 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각각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이하 "행동강	제9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임기) ----- ----- -----

현 행	개선안(예시)
령 조례"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이 겸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는 행동강령 조례 제22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u><후 단 신 설 ></u>	----- ----- ----- ----- ----- <u>다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중 제4항은 제외한다.</u>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0조(자문위원회 임기) ①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u>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80조(자문위원회 임기) ①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u>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 또는 <u>4년으로 한다.</u> (후단 생략)

[타 기관 우수사례]

■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4(징계 등)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1. 검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검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도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도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검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② 이 조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98조부터 제101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80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별표 1] 징계기준(제7조의4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품위유지	○ 음주운전 1) 면허정지 2) 면허취소 3) 2회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5)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 성폭력, 성희롱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2. 청렴의무	○ 탈세 ○ 면탈 ○ 금품수수 1) 직무와 관련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고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2) 직무와 관련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고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출석정지, 제명
3. 영리거래 금지 (수익계약체결 제한 위반)	○ 영리거래금지 위반 ○ 수익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익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겸직금지	○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 금지 위반	공개사과, 출석정지 (상임위원회 변경)
6. 회피의무	○ 회피의무 위반	경고, 공개사과
7.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공개 위반	공개사과
8. 회의불참	○ 회기당 3회 이상	경고, 공개사과
9. 갑질 행위	○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의원,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3. 지방의원 외유성 국외출장 차단

평가대상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등

■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5조(심사기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 3인 미만의 의원이 제2조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

* 심사위원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 없음

■ 「충청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의장이 위촉하는 대학교수·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은자 각 2명과 의회부의장 1명, 당연직 위원으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및 의회사무처장이 된다.

*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출장 제한, 부당지출경비 환수조치, 회의록 공개 규정 없음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공개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 현황

- '22년도 광역지자체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여비로 편성된 예산은 31.3억원(1인당 4백만원)

< 2022년 광역시·도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편성 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계			특별시			광역시			도		
의원수	예산액	1인당	의원수	예산액	1인당	의원수	예산액	1인당	의원수	예산액	1인당
810	3,130	3.9	110	510	5	181	760	4	519	1,860	4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2023.3)

-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행안부)은 공무국외출장 타당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회 설치, 출장 제한, 심사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

< 관계 법령 >

■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행정안전부, '19.2)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기타 지방의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소속 지방의회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시.도(○○시.군.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지방의회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시.도의회 9인(시.군.구 의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④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허가권자가 정한다.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또는 의사담당관 등)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지방의회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지방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 문제점

① (심사생략) 표준안은 외국 정부·지자체의 공식행사, 국제회의, 지자체 요청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으나

- 경남도의회는 3인 미만 출장인 경우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출장 적정성 등을 심사받아야 하는 출장도 심사 생략이 가능
- 전남도의회는 출장 허가 후 변경 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같이 구체성이 없는 포괄적 규정을 두고 있어 자의적으로 심사를 생략할 우려

② (심사기준) 표준안에 따라 출장 필요성·적정성 등 심사를 위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하나

- 충남도의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부재로 자의적 심사가 우려

③ (출장제한) 표준안은 지방의회 개회 중,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가 있는 해 등 공무국외출장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 충남도의회는 공무국외출장 제한 규정이 없고, 전남도의회는 표준안 출장 제한 사유 중 일부*가 누락되어 부적절한 출장 통제에 한계

*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선거가 있는 해에 출장을 계획한 경우

- ④ (위원구성)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는 외부추천을 받은 민간위원을 2/3 이상 포함하여 9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인 지방의회의원이 출장자인 경우 심사에서 배제하여야 하나
- 세종시의회는 민간위원을 2/3 미만인 5인 이상으로 정하여 민간위원 참여비율이 미흡
 - 충남도의회는 심사위원을 7명 이내로 구성하고, 민간위원 4명 중 2명은 의장이 위촉하도록 하여 심사 공정성 확보가 미흡
 - 제주도의회는 모든 민간위원을 외부 추천 없이 의장이 위촉하고, 심사위원 중 출장 당사자인 의원을 안전에서 배제할 근거가 없어 이해충돌 발생 소지
 - 인천시의회는 민간위원 외부 추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의장이 위원 구성에 관해 과도한 재량권 행사 우려
- ⑤ (위원임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의 임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 장기연임으로 인한 폐단 방지를 위해 연임 제한이 필요하나
- 부산시의회 등 8개 시·도의회는 위촉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면서 연임제한은 없고 경남도의회는 위원 임기 규정이 없어 장기연임 가능
- ⑥ (회의운영) 공무국외출장 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해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하나
- 세종시의회는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완화하고, 인천시의회, 세종시의회, 충남도의회는 회의록 공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회의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이 미흡
- ⑦ (출장비)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장목적·계획과 다르게 지출된 부당 경비는 환수 조치해야 하나
- 충남도의회는 부당하게 지출된 국외출장 경비에 대한 환수 규정이 없어 재정 누수 가능성

〈 시·도의회별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현황 〉

구 분	출장 심사		출장 제한		심사위원회 구성					회의 운영	
	심사 생략	심사 기준	제한 사유	경비 환수	위원 구성 (9인 이상)	민간위원		의원 제척	임기, 연임 제한	의결 정족수	회의록 공개
						비율 (2/3 이상)	외부 추천				
강원도의회									미흡		
경기도의회											
경남도의회	미흡								없음		
경북도의회											
광주시의회									미흡		
대구시의회									미흡		
대전시의회											
부산시의회									미흡		
서울시의회											
세종시의회						미흡			미흡	미흡	없음
울산시의회											
인천시의회							미흡		미흡		
전남도의회	미흡		미흡								없음
전북도의회									미흡		
제주도의회							미흡	없음			
충남도의회		없음	없음	없음	미흡		미흡				없음
충북도의회									미흡		

< 언론사례 >

- ◆ 제 기능 못하는 시의회 해외연수 심사위 ...“제도 개선해야” (KBS, 2022. 10.)
- ◆ ‘외유성 출장 비판’ 시민단체 대표, “외유떠난 시의원들 고발” (뉴스프리존, 2022. 6.)

□ 개선방안

- ① 경남도의회, 전남도의회는 공무국외출장계획 심사 및 허가 후 변경 심사 생략기준 개선
- ② 충남도의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마련
- ③ 충남도의회는 공무국외출장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전남도의회는 표준안에서 제시한 출장 제한 사유 중 누락된 사유 추가
- ④ 인천시의회 등 4개 시·도의회는 심사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심사위원 구성 관련 규정 개선
 - 인천시의회, 제주도의회는 외부 추천으로 민원위원을 위촉하도록 개선
 - 제주도의회는 심사위원인 의원이 출장 당사자인 경우 해당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 규정 마련
 - 세종시의회는 민간위원 비율을 2/3 이상으로 확대하고, 충남도의회는 심사위원을 9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은 모두 외부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개선
- ⑤ 부산시의회 등 9개 시·도의회는 심사위원의 연임을 제한하고, 경남도 의회는 위원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 마련
- ⑥ 세종시의회는 심사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2/3 이상으로 개선하고, 전남도의회 등 3개 시·도의회는 회의록 공개 규정 마련
- ⑦ 충남도의회는 출장목적·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출장경비 환수 근거 마련

【자치법규안 1】 경남도의회 등 2개 시·도의회

현 행	개선안(예시)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5조(심사기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 3인 미만의 의원이 제2조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	제5조(심사기준) ② (현행과 같음) <u>< 삭제 ></u>
「전라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전라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의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	제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현행과 같음) <u>< 삭제 > 또는 4. 그 밖에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경우</u>

【자치법규안 2】 「충청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선안(예시)
<u>< 신설 ></u>	<u>제0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는데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u> * 별표는 행안부 표준안 참고

【자치법규안 3·7】 충남도의회 등 2개 시·도의회

현 행	개선안(예시)
「충청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u>< 신설 ></u>	<u>제0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지방의회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u> <u>1. 지방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u>

현 행	개선안(예시)
	<u>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u> 2. <u>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u> 3. <u>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u> 4. <u>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u> ② <u>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u>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4조의2(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3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 4. (생략) <u>< 신설 ></u>	제4조의2(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u>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u>

【자치법규안 4】 인천시의회 등 4개 시·도의회

현 행	개선안(예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생략) ② 심사위원은 의장이 위촉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사위원은 의장이 위촉하되, <u>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며</u>,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

현 행	개선안(예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② (생략) ③ 심사위원은 <u>도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대학교수 및 관련전문가, 시민사회단체의 대표 등 6명의 민간위원과 도의회 의장이 지명하는 도의회의원 2명, 의회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u> <후단 신설>	상으로 구성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심사위원은 <u>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도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대학교수 및 관련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 6명의 민간위원과 도의회 의장이 지명하는 도의회의원 2명, 의회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u> <u>다만, 심사위원인 도의회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u>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④ (생략)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 3. (생략) 4. 민간위원 : 5명 이상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민간위원 : <u>6명</u> 이상
「충청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u>7명 이내로 구성한다.</u> ③ 위원은 <u>의장이 위촉하는 대학교수·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은자 각 2명과 의회부의장 1명, 당연직 위원으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및 의회사무처장이 된다.</u>	제9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u>9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u> ③ 위원은 <u>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 민간위원</u>과 의회부의장 1명, 당연직 위원으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및 의회사무처장이 된다.

【자치법규안 5】 부산시의회 등 9개 시·도의회

현 행	개선안(예시)
「부산광역시회의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연임할 수 있다.</u>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3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⑤ (생략) < 신설 >	제3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자치법규안 6】 세종시의회 등 3개 시·도의회

현 행	개선안(예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6조(심사위원회 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⑤ (생략) < 신설 >	제6조(심사위원회 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u>2/3 이상</u>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⑤ (생략) ⑥ 위원장은 <u>회의록을 지체없이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u>

[타 기관 우수사례]

■ 「울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직접 주최하는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외국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외국의 도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협약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을 가는 경우
4.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이 의원 동반 국외출장을 요청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
6. 그 밖에 국외연수 등 울산광역시의회의원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국외출장의 필요성 및 국외출장 참가자의 적합성
2. 국외출장 방문국가와 방문기관의 타당성
3. 국외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경비의 적정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심사기준) 제4조제2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세부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모두 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부위원장이나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울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의정담당관이 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을 가려는 의원 중 1명 이상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국외출장계획에 대한 설명 및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사 또는 위원회에서 참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록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공무국외출장의 제한) ① 의장은 국제회의 참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 중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2. 의원 전원 또는 1명이 단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이 경우 제한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100조의 징계의 종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정한다.

③ 국외 공공기관과 공식일정이 계획된 경우,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취소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5조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수행이 가능한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4. 지방의원 국내 출장비 부정수령 방지

평가대상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 「서울특별시회의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여비지급 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기준은 국내여비는 별표 3, 국외여비는 별표 4와 같다.

② 관내출장여비는 별표 3의 국내여비 중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하되, 관용차량을 이용한 때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 여비 부정수령자 5배 가산 징수 규정 없음

■ 관련 조례 미흡(가나다 순) : 경기도의회, 경남도의회, 경북도의회, 광주시의회, 대구시의회, 부산시의회, 서울시의회, 제주도의회, 충북도의회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재정누수 가능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지원되고 있거나 지원기준 등의 불명확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현황

- '22년도 광역지자체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여비로 편성된 예산은 21.7억원(1인당 3백만원)

< 2022년 광역시·도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편성 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계			특별시			광역시			도		
의원수	예산액	1인당	의원수	예산액	1인당	의원수	예산액	1인당	의원수	예산액	1인당
810	2,172	2	110	198	2	181	217	2	519	1,757	3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2023.3)

- 지방의회의원의 여비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고, 세부기준은 각 시·도회의의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에 규정하거나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을 준용

< 관계 법령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 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보상 등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단서 생략)

-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 문제점

- ① (여비 환수)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여비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등에 따라 여비 수령 시 부정 수령액 환수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하고
 - 대부분 시·도의회는 위 법령 준용을 통해 의원의 허위출장 등에 따른 출장비 부정 수령을 통제하고 있으나
 - 경기도의회, 경남도의회, 서울시의회는 가산 징수 규정이 없어 허위출장 및 부정수령 통제가 어렵고 재정 누수 우려
- ② (근무지내 출장여비) 공무원여비규정은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운임·식비를 제외한 일비만 지급하도록 했으나
 - 경북도의회 등 6개 시·도의회는 일비와 식비를 지급하고, 제주도의회는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도록 규정

〈 시·도의회별 의원 국내여비 지급 규정 현황 〉

구 분	출장비 부정 수령 5배 가산 징수	근무지내 출장 시 교통비·식비 지급
강원도의회	준용(강원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미지급
경기도의회	규정 없음	미지급
경남도의회	규정 없음	미지급
경북도의회	준용(경북도 소속공무원 여비 조례)	지급
광주시의회	준용(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지급
대구시의회	준용(대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2배 가산)	지급
대전시의회	준용(대전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공무원 여비 규정)	미지급
부산시의회	준용(부산시 공무원 여비 조례, 2배 가산)	지급
서울시의회	규정 없음	지급
세종시의회	준용(세종시 소속공무원 여비 조례, 2배 가산)	미지급
울산시의회	준용(울산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미지급
인천시의회	준용(인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	미지급
전남도의회	준용(공무원 여비 규정)	미지급

구 분	출장비 부정 수령 5배 가산 징수	근무지내 출장 시 교통비·식비 지급
전북도의회	준용(공무원 여비 규정)	미지급
제주도의회	준용(공무원 여비 규정)	지급
충남도의회	조례 없음(충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준용)	미지급
충북도의회	준용(충북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지급

< 권익위 점검사례 >

- (△△군) 지방의원 9명은 3,542건의 근무지내 출장 여비로 조례 등 근거도 없이 1건당 식비 25,000원을 초과 지급 받아 총 88,550천원 부당 수령
- (◆◆군) 여비 조례 규정을 근거로 근무지내 출장 1건당 45,000원씩 초과 지급하는 등 총 16,56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자체적으로 근무지내 출장 여비 지급 중지
- (●●군) 의원B는 해외체류기간에 3회에 걸쳐 45,000원씩 135,000원의 근무지내 출장 여비를 수령. 의원C는 해외체류기간에 1회 45,000원, 의원D는 해외체류기간에 1회 45,000원의 근무지내 출장 여비 수령
- (△△군) 전자결재를 통해 전 의원을 주 5일 단위로 관내 상시 출장을 의장에게 상신 및 결재를 받은 후 정확한 출장 정산·관리 없이 일괄 지급 방식으로 지방의원 7명에 대해 3년 6개월 동안 79,149천원의 여비 지급
- (▲▲군) 지방의원 8명에 대해 약 1달가량 관내 출장을 상신하고 별도 증빙 및 정산 없이 약 10여만 원을 수당처럼 수령, 이후 지급의 적성성 문제 제기로 지급 중지

□ 개선방안

- ① 경기도의회 등 3개 시·도의회는 여비 부정 수령자에 대해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가산 징수 근거 마련
- ② 경북도의회 등 7개 시·도의회는 근무지 내 출장 여비가 과다 지급 되지 않도록 교통비·식비 지급 삭제

【자치법규안 1】 경기도의회 등 3개 시·도의회

현 행	개선안(예시)
「〇〇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신설 >	제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〇〇시(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 참고 > 「경기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제5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경남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제5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제4조(여비 부당 수령의 가산징수)

【자치법규안 2】 경북도의회 등 7개 시·도의회

현 행	개선안(예시)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여비지급 기준) ① (생략) [별표1] 비고 1.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 에는 <u>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u> (후단 생략)	제8조(여비지급 기준) ① (현행과 같음) [별표1] 비고 1.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 에는 <u>일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u> (후단 생략)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여비지급 기준) ① (생략) ② 관내출장여비는 별표 3의 국내여비 중 <u>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하되</u> , 관용차량을 이용한 때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제5조(여비지급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내출장여비는 별표 3의 국내여비 중 <u>일비만을 지급하되</u> , 관용차량을 이용한 때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타 기관 우수사례]

■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강원도의회 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강원도의회 공무원 여비조례」

제4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등)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각호 생략)

■ 「전라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여비 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제외한다)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제5조(여비의 지급기준) 제4조에 따른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준용)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5.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투명성 제고

평가대상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등

■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3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3.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대인원 1인 1회당 4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집행함. 다만,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음

* 부당사용자 제재, 교육 및 점검 규정 없음

■ 관련 조례 미흡(가나다순) : 경기도의회, 경북도의회, 광주시의회, 대구시의회, 울산시의회, 전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충북도의회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공개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 현황

○ '22년도 광역지자체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수행 및 의정활동을 위해 편성된 업무추진비는 121억원

< 2022년 광역시·도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특별시	광역시	도
계	12,095	1,440	3,431	7,224
의정운영 공통경비	7,571	1,025	1,828	4,718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4,524	415	1,603	2,506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2023.3)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지방의회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
- 강원도의회, 경남도의회, 대전시의회, 세종시의회를 제외한 13개 시·도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집행에 관해 자체 조례 운영

< 관계 법령 >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 나.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②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2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제3조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 방법은 별표 1 제8호나목 및 별표 2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기준 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지출증빙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행정안전부훈령)

제121조(집행현황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집행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가. 대상: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나. 항목 및 주기와 시기: 별표 2에 따름

[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4. 업무추진비(203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 (1)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 (2)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관련 근무지란 시·도의 경우 해당 시·도, 시·군·구의 경우 해당 시·군·구와 그 경계를 접한 인접 시·군·구를 말함)
 - (3) 비정상시간대(23시~다음날 6시)
 - (4) 사용자의 자택근처
 - (5)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
 - 증빙자료 작성 시에는 일시, 장소, 목적, 집행대상,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을 따른다.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를 단체장 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 없다.
 - 개인명의로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개인별로 거두어서 내는 성금

□ 문제점

- ① (접대비) 행안부 훈령은 접대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 1인 1회당 4만원 이하(불가피성 입증 시 4만원 초과)로 집행하고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청탁금지법에 따라 집행

- 광주시의회는 접대비를 4만원 이하로 정하면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대한 집행기준은 명시하지 않아 법령을 위반할 우려
- ② (사용제한) 대부분 시·도의회가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을 열거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사용 제한을 따르도록 해 의정활동과 무관한 사적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 광주시의회, 울산시의회는 사용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다른 법령 준용 여부도 불분명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방지가 미흡
- ③ (부당사용 제재)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자에 대해 환수,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재 규정이 있어야 함에도
 - 광주시의회, 전남도의회는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 제재 규정이 없어 부당사용이 적발되더라도 제재 불가능
 - 충남도의회는 부당사용자에 대해 윤리특위에 회부하도록 했으나 환수, 징계 등 구체적 제재방안이 없어 실효성 미흡
 - 경기도의회 등 5개 시·도의회는 제재 및 환수·징계 등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제재 규정이 사문화될 우려
- ④ (교육·점검) 대부분 시·도의회는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방지를 위해 연 1회 이상 의원 교육, 사용내역 모니터링을 의무화했으나
 - 광주시의회, 전남도의회, 충남도의회는 교육 및 점검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부당사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미흡하고
 - 경기도의회, 경북도의회, 울산시의회는 교육 및 점검을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될 소지

〈 시·도의회별 의원 업무추진비 규정 현황 〉

구 분	사용 제한	부당사용자 제재	교육 및 점검	관련 규정
강원도의회				조례 없음
경기도의회		임의규정	임의규정	

구 분	사용 제한	부당사용자 제재	교육 및 점검	관련 규정
경남도의회				조례 없음
경북도의회		임의규정	임의규정	
광주시의회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규정 없음	
대구시의회		임의규정		
대전시의회				조례 없음
부산시의회				
서울시의회				
세종시의회				조례 없음
울산시의회	규정 없음	임의규정	임의규정	
인천시의회				
전남도의회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전북도의회				
제주도의회				
충남도의회		환수·징계 없음	규정 없음	
충북도의회		임의규정		

< 언론사례 >

- ◆ “자택 인근식당·해외서 사용” ...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의심사례 139건(뉴시스, '23.3.)
- ◆ 선거운동기간에도 업무추진비 사용한 의원은 누구? (오마이뉴스, '22.11.)
- ◆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에 명절선물 (뉴스프리존, '22.2.)
- ◆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방만한 씹씹이'..조례와 규칙 개선됐나? (KBS, '21.12.)

□ 개선방안

- ① 광주시의회는 행안부 훈령에 따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접대비 집행기준을 조례에 반영
- ② 광주시의회, 울산시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을 기준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명시
- ③ 광주시의회, 전남도의회, 충남도의회는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및 환수, 징계 등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경기도의회 등 5개 시·도의회는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선

- ④ 광주시의회, 전남도의회, 충남도의회는 업무추진비 교육 및 점검 규정을 신설하고, 경기도의회, 경북도의회, 울산시의회는 교육·점검, 부당사용 확인 시 제재에 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선

【자치법규안 1】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현 행	개선안(예시)
제3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대인원 1인 1회당 4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집행함. 다만, 행사 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음 <u><후단 신설></u>	제3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대인원 1인 1회당 4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집행함. 다만, 행사 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음. <u>다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청탁 금지법을 따른다.</u>

【자치법규안 2】 울산시의회, 광주시의회

현 행	개선안(예시)
「울산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u>< 신설 ></u>	제0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①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의 각 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서 제5호의 경우는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1.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2.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관련 근무

현 행	개선안(예시)
	<u>지란 시·도의 경우 해당 시·도, 시·군·구의 경우 해당 시·군·구와 그 경계를 접한 인접 시·군·구를 말함</u> <u>3. 비정상시간대(23시~다음날 6시)</u> <u>4. 사용자의 자택 근처</u> <u>5.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u> <u>6.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 용도의 사용</u> <u>7.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u> <u>8. 의원 및 공무원의 해외 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u> <u>9.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 의원 상호간 식사</u> <u>10. 언론·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격려금</u> <u>11.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우</u>

【자치법규안 3】 전남도의회 등 8개 시·도의회

현 행	개선안(예시)
「전라남도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u>< 신설 ></u>	제0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현 행	개선안(예시)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u>회부하여야 한다.</u>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u>취하여야 한다.</u>

【자치법규안 4】 충남도의회 등 6개 시·도의회

현 행	개선안(예시)
「충청남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u>< 신설 ></u>	<u>제0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u> <u>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 *제△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울산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의 부당사용 방지를 위하여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의 부당사용 방지를 위하여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관련 교육을 <u>실시하여야 한다.</u>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u>취하여야 한다.</u>

[타 기관 우수사례]

■ 「전라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①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 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회계관계공무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별표 2에 규정된 직무활동 외의 활동

② 「공직선거법」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별표 2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전라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게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무제한 연임 방지

평가대상

고문 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 「인천광역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제3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시장은 3년 이상 개업 중인 공인회계사·세무사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회계사·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문회계사·세무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③ 고문회계사·세무사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고문회계사·세무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세무 자문 수행을 기피하거나 무성의한 자문을 한 경우
3. 시정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수당 등) ① 시장은 고문회계사·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문회계사·세무사에게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서면에 따른 자문사항이 월 3건 이상인 경우
2. 시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1건의 자문을 위하여 5시간 이상이 걸렸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자문이 필요한 1건의 사안을 방문하여 3시간 이상 자문에 응한 경우
4. 그 밖의 방법으로 자문의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현황

- 인천시장은 회계 및 세무에 관한 사항, 시가 출자·출연하는 법인 및 공기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고문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를 위촉
 - 3년 이상 개업 중인 공인회계사·세무사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 회계사·세무사로 위촉하고, 2년 임기로 월 20만원 수당 지급

□ 문제점

- 인천시는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임기와 해촉에 관한 규정만 있고 연임 제한이나 재위촉에 관한 규정이 없어
 - 특정인의 무제한 연임이 가능해 이로 인한 부패발생이 우려되고,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다른 전문가의 위촉 기회를 제한할 가능성

□ 개선방안

- 고문 공인회계사 및 공인세무사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 마련

【자치법규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공인세무사 운영 조례」

현 행	개선안(예시)
제3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시장은 3년 이상 개업 중인 공인회계사·세무사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회계사·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문회계사·세무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③ 고문회계사·세무사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고문회계사·세무사를 위촉 해	제3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시장은 3년 이상 개업 중인 공인회계사·세무사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회계사·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문회계사·세무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u>③ 고문회계사·세무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0차례 연임할 수 있다.</u>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고문회계사·세무사를 위

현 행	개선안(예시)
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세무 자문 수행을 기피하거나 무성의한 자문을 한 경우 3. 시정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세무 자문 수행을 기피하거나 무성의한 자문을 한 경우 3. 시정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타 기관 우수사례]

■ 고양시 「고양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제3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시장은 3년 이상 개업 중인 공인회계사·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회계사·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문회계사·세무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③ 고문회계사·세무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고문회계사·세무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세무 자문 수행을 기피하거나, 불성실하게 자문을 한 경우
3. 시정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원시 「수원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

제3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시장은 3년 이상 개업 중인 공인회계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회계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문회계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③ 고문회계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7. 공용차량 관리 강화

평가대상

공용차량 관리 규칙

■ 「울산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운영하는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2.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제17조(차량 관리방법))

- ④ 시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광주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0조(차종변경 승인) ① 차량관리기관의 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 하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변경은 당해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등으로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재정누수 가능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지원되고 있거나 지원기준 등의 불명확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현황

- 시·도는 공용차량 관리를 위해 각 지자체별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제정·운영 중
- 각 시·도는 전용차량, 업무용차량, 특수차량 등 차종(용도)별 차량(구입 및 임차)의 정수(定數)를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함
- 해당 규칙은 공용차량의 차종(용도) 변경, 차량 교체 및 사용·관리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공용차량 관리 관련 규칙 주요 내용 >

- ◆ (차량정수) 차종·차형별 구매, 임차할 수 있는 차량대수(업무량, 정원 등에 따라 결정)
- ◆ (차종(용도))

차종(용도)	차형(크기)	배정 대상
1. 전용(승용 자동차)	대형승용차	시장, 의회의장 등
2. 의전용(승용 자동차)	대형, 중형 승용차	시 본청, 시 의회 등
3. 업무용(승용 자동차)	중형~경형 승용차	단위 부서
4. 승합자동차	대형~경형 승합차	"
5. 화물자동차	대형~경형 화물차	"
6. 특수자동차	급수차, 소방차 등	"

- ◆ (차종(용도) 변경) 차종 운행량 증감 등으로 승합·화물·특수용 차량 상호 간 차종 변경
- ◆ (차량 교체) 내구연한 초과, 수리사용 불가 등의 경우 가능
- ◆ (사용 관리) 개인적 용도로 사용 금지, 차량 외부에 공용차량임을 표시 등

□ 문제점

- ① 공용차량은 정수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고, 정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므로 정수 관리가 핵심임에도
 - 일부 지자체는 임차 차량이 정수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하여 구입한 차량만 관리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
 - 정수를 초과하여 차량을 임차하는 사례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등 재정누수 가능성 존재

② 공용차량의 정수 및 운영현황에 대한 공개 규정 미흡으로 일반 국민 등이 해당 내용 확인이 어려워 외부 통제 한계

- 중앙부처는 차량의 정수 및 그에 따른 운영현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11조)
- 일부 시·도는 공개 규정이 없거나 단순히 보유 현황만 공개하는 등 공개 내용이 미흡하고,
- 규정상의 정수를 초과하여 공용차를 운영하고 있는지, 공개된 정수 및 운영현황에 임차한 차량이 포함된 것인지 등 확인 곤란하여
- 공개를 통한 외부 통제 등이 어렵고 공개 규정이 형해화될 우려

〈 공용차량 현황 공개 〉

공개 내용	중앙부처	일부 지자체
정수 현황	공개	미공개
보유 현황	공개 (구입·임차 표기)	공개 (구입·임차 미표기)
전용차량 보유현황	〃	미공개
구입(임차) 및 처분현황(최근 1년간)	〃	미공개

③ 차종(용도) 변경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전용차량을 업무용으로 변경하고 신차로 재구입·임차하는 등 재량 남용 및 재정 누수 우려

- 통상 차종(용도)의 변경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종 상호간에 가능하고, 승용차량(전용, 업무용 등)간의 변경은 제한
- 일부 시·도는 승용자동차의 차종 변경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편법 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규정

※ ✓ ① 기관장 전용자동차를 업무용(또는 의전용) 승용차로 차종 변경 →

② 신형 자동차를 새로 임차하여 기관장 전용자동차로 사용

✓ OO시에서 기존의 전용차량('20.2. 구입)을 업무용으로 바꾸고, 새로운 차량을 렌트하여 전용차량으로 이용('22.7.12, 인천일보)

- 한편, 중앙부처의 경우 최단운행기간 및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승용차만 업무용을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④ 공용차량은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취지로 차량 외부에 공용차량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 일부 시·도는 공용차량에 공무용임을 표시하는 규정이 부재해 공용차량의 사적 사용(출퇴근 등) 방지 미흡

〈 시·도별 공용차량 관리 규정 현황〉

구분	임차차량 포함	현황 공개	차종 변경 기준	공용차량 표시
강원도		미흡		미흡
경기도			미흡	
경남도		미흡		미흡
경북도				
광주시	미흡	미흡	미흡	
대구시		미흡		
대전시	미흡	미흡		
부산시		미흡		
서울시		미흡	미흡	
세종시				
울산시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인천시		미흡		
전남도		미흡		
전북도		미흡		미흡
제주도				미흡
충남도				
충북도	미흡			

□ 개선방안

- ① 울산시 등은 임차 차량도 차량 정수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 명확하도록 규정을 개선

② 서울시 등은 차량 정수 및 운영 현황 등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

- 규정상 정수 현황, 실제 보유·운영 현황 등이 모두 공개되도록 서식 정비

③ 광주시 등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종 상호간 외 승용차 간에는 차종(용도) 변경이 제한되도록 규정

④ 경남도 등은 공용차량 외부에 공용차량임을 표시하는 규정 마련

【자치법규안】「울산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현 행	개선안(예시)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u>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운영하는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u>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신 설> 2 ~ 11. (생 략) 제17조(차량 관리방법) ④ 시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 후단 신설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u>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운영하는 자동차로 임차차량을 포함하여 (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u>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 12 (현행 2~11과 동일) 제17조(차량 관리방법) ④ 시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안되며, <u>차량의 외부에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u> 다만, 수사·직무감찰 등 공무수행에

현 행	개선안(예시)
제23조(기록관리) ①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8호서식] 3. 차량운행일지[별지 제9호서식] 4.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0호서식] 5.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11호서식] ② 단위부서의 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부서의 실정에 맞도록 개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u>있어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u> 제23조(기록관리) ①~② (현행과 동일) <u>제23조의2(차량 보유 현황 등 공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 현황을 별지 제○호 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u>

【자치법규안】「광주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현 행	개선안(예시)
제10조(차종변경 승인) ①차량관리기관의 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 하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변경은 당해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u>차종별 운행량의 증감등으로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u>	제10조(차종변경 승인) ①차량관리기관의 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 하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변경은 당해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등으로 <u>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u>

【참고】공용차량 정수 및 운영 현황 공개 예시

중앙
부처
(예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용차량 현황

1. 공용차량 정수 현황 (소속기관 및 보유차량현황관리, 차량보유현황 포함)

기종명	합계	승용(임용)				승용(임부용)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승계	대행	승용	승용	승계	대행	승용	승용	승계	대행	승용	승용	승계	대행	승용	승용	승계	대행	승용	승용
합계	17	4	4	0	0	0	0	2	6	0	1	4	3	1	0	0	0	0	0	0	0
공공	12	4	4	0	0	0	0	6	1	4	0	1	2	1	1	0	0	0	0	0	0
정부합동지원센터	3	0	0	0	0	0	0	2	1	1	0	0	1	1	0	0	0	0	0	0	0
청년연수원	2	0	0	0	0	0	0	1	1	0	0	1	1	0	0	0	0	0	0	0	0

2. 공용차량 보유 현황

* 2022.12.31 기준 기종에서 삭제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유대 및 일차 포함)

기종명	구분	합계	승용(임용)				승용(임부용)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승계	대행	승용	승용	승계	대행	승용	승용	승계	대행	승용	승용	승계	대행	승용	승용	승계	대행	승용	승용
합계	유대	17	4	4	0	0	0	0	2	6	0	1	4	3	1	0	0	0	0	0	0	0
	유대	12	0	0	0	0	0	0	2	6	0	1	4	3	1	0	0	0	0	0	0	0
	일차	4	4	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국민권익위원회	유대	12	4	4	0	0	0	0	6	1	4	0	1	2	1	1	0	0	0	0	0	0
	유대	8	0	0	0	0	0	0	6	1	4	0	1	2	1	1	0	0	0	0	0	0
	일차	4	4	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정부합동지원센터	유대	3	0	0	0	0	0	0	2	1	1	0	0	1	1	0	0	0	0	0	0	0
	유대	3	0	0	0	0	0	0	2	1	1	0	0	1	1	0	0	0	0	0	0	0
	일차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청년연수원	유대	2	0	0	0	0	0	0	1	1	0	0	1	1	1	0	0	0	0	0	0	0
	유대	2	0	0	0	0	0	0	1	1	0	0	1	1	0	0	0	0	0	0	0	0
	일차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전용차량 보유 현황

번호	종류명	소속기관명	배정대상 직명	배정대상 직명	차량	배기량	구입/일차	구입/일차 일차
1	국민권익위원회	공공	차량관리	차량관리	국민권익위원회	2000	일차	2019-07-09
2	국민권익위원회	공공	차량관리	차량관리	국민권익위원회	2000	일차	2021-09-16
3	국민권익위원회	공공	차량관리	차량관리	국민권익위원회	2000	일차	2019-06-01
4	국민권익위원회	공공	차량관리	차량관리	국민권익위원회	2000	일차	2020-04-16

4. 공용차량 구입(임차) 및 처분현황

* 기간: 2022.1.1 ~ 2022.12.31 기준 현재

구분	합계	승용(임용)				승용(임부용)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승계	대행	승용	승용	승계	대행	승용	승용	승계	대행	승용	승용	승계	대행	승용	승용	승계	대행	승용	승용
구입(임차)	합계	1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구입	1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임차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구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임차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처분	합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구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임차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구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임차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지방
자치
단체
(예시)

공용차량 운영 현황					
(2022.7.27 현재)					
연번	차 명	등록번호	취득금액(천원)	등록일자	비고
1	봉고III	86서2509	12,790	2005-06-02	
2	FX212	73구9362	176,000	2009-06-26	
3	이-카운티	73보9199	55,002	2011-04-22	
4	레이 전기차	24다7846	45,000	2012-06-01	
5	레이 전기차	24다7847	45,000	2012-06-01	
6	레이 전기차	24다7848	45,000	2012-06-01	
7	레이 전기차	24다7849	45,000	2012-06-01	
8	스파크	55다3042	13,000	2013-07-10	
9	스파크	55다3043	13,000	2013-07-10	
10	스파크	55다3044	13,000	2013-07-10	
11	유니버스	71우6030	173,800	2013-09-16	
12	유니버스	71보5606	143,600	2013-09-26	
13	FX212	71우6068	175,000	2014-08-29	
14	그랜드 스타렉스	73노8244	22,619	2015-10-28	
15	스파크1.0	30구0801	12,136	2016-04-11	
16	스파크1.0	30구0802	12,136	2016-04-11	
17	스파크1.0	30구0803	12,136	2016-04-11	
18	아반떼	30구0464	17,690	2016-06-22	
19	아반떼	30구0474	17,690	2016-06-22	
20	아반떼	30오0964	17,690	2016-06-22	
21	아반떼	30오0974	17,690	2016-06-22	
22	K5하이브리드	17도0379	27,200	2016-06-30	
23	말리부	38라5193	27,540	2017-03-22	
24	스파크1.0	38라5013	13,470	2017-03-22	
25	스파크1.0	38라5014	13,470	2017-03-22	
26	아이오닉	57보3706	42,430	2017-05-22	
27	아이오닉	57보3760	40,141	2017-05-22	
28	아반떼	58다6869	19,768	2017-06-26	
29	아반떼	58다6870	19,718	2017-06-26	
30	아반떼	58다6871	19,718	2017-06-26	
31	아반떼	58다6872	19,768	2017-06-26	
32	아반떼	58다6873	19,568	2017-06-26	

[타 기관 우수사례]

■ 「대구광역시 공용차량관리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운영하는「자동차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자동차관리법」제3조 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량의 종류(이하 "차종"이라 한다)별 및 차량의 유형(이하 "차형"이라 한다)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4. ~ 14. (생략)

제10조(차종변경 승인)

-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종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0조(차량관리 및 운행)

- ④ 각 기관의 모든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의전용 차량 등 공무수행에 있어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세종특별자치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6조의2(차량 보유현황 공개) 차량의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차량 보유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8. 지방공무원 출장비 부정수령 방지

평가대상

공무원 여비 조례

■ 전라남도 「전라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적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1. 영 제8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별표 1]

운임 숙박비 지급 기준(제5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숙박비(1박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실비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제5조(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의 출장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재정누수 가능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지원되고 있거나 지원기준 등의 불명확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현황

- 지방공무원의 국내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등을 준용하고 있고, 각 지자체의 개별 조례로 별도 규정
- 운임비 및 숙박비는 실비로 지급하고 증거서류 제출 후 정산

< 관계 법령 >

■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②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여행자의 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31조(가산징수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 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문제점

- ① 공무원 여비 규정은 운임비 및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증거서류를 통해 해당 공무원에 의해 정산하도록** 규정한 반면
- 전남도 등은 지방공무원 국내 출장 정산에 대해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지 않도록” 조례에 명시
 - 실비 정산을 하지 않거나 편법·악용하는 수법으로 예산을 부정하게 편취 할 우려
- ※ 허위영수증으로 운임비, 숙박비 수령 후 정산서류에는 고의로 누락
- ② 대부분 시·도는 출장비 부정 수령자에게 법령 등에 따라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징수하고 있으나,
- 부산시 등은 2배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가산·징수하도록 규정하여 제재의 실효성 미약
- ③ 전남도 등은 운임비 및 숙박비에 대해 실비로 지급하도록 하는 공무원 여비규정과 다르게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허위 출장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부패 개연성 상존
- 특히,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없어도 숙박비 정액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규정
- ※ '15.1.6.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대부분 지자체가 국내출장 중 운임 및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함에도 전남도 등은 정액 지급하도록 조례에 규정

< 언론사례 >

- **9개월간 '허위출장' 146회...1440만원 행진 공무원 (뉴스1, '21.7.)**
 - 지자체 징수과장 A씨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9개월간 체납세금 징수 활동 및 코로나19 방역활동 명목으로 총 146차례 출장을 갔으나 모두 허위로 밝혀져 출장으로 받아간 여비 1440만원에 대해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해 환수**하도록 하고 중징계 요구
- **하이패스 영수증까지 위조 ...4,800만원 출장비 '슬쩍' (KBS, '20.9.)**
 - ○○남도 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 17명이 출장도 가지않고 출장비 수천만원을 받아낸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됨
- **출장비 부정수급 여전...인천 미추홀구 547명 적발 (경인방송, '22.3.)**
 - 구는 2016년과 2018년, 2019년 일부 기간의 출장비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2천 14건(547명)을 적발해 2천 26만원을 회수했음
- **●●시, 수당·출장비 부정수령 공무원 82명 적발...126만원 환수 (인천일보, '22.3.)**

□ 개선방안

- ① 전남도 등은 국내 출장 시 지급한 운임비 및 숙박비에 대해 증거 서류 제출 등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 정산하도록 개선
 - “영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조문 내용 삭제
 - ※ 부산시, 전남도, 전북도
- ② 부산시 등은 출장여비의 부정수령자에 대하여 2배가 아닌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징수
 - ※ 강원도, 대구시, 부산시, 세종시, 전남도
- ③ 전남도 등은 국내 출장여비를 정액에서 실비로 지급될 수 있도록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변경
 - 숙박비의 경우 실비로 지급하되, 지역별 상한선을 설정
 - ※ 경남도, 부산시, 전남도, 충북도

【자치법규안】 전라남도 「전라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등

현행	개선안(예시)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적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1. 영 제8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 8. (생략)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적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1. <u>< 삭제 ></u> 2 ~ 8. (현행과 같음)																																				
제5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별표 1] 운임 숙박비 지급 기준(제5조 관련)	제5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별표 1] 운임 숙박비 지급 기준(제5조 관련)																																				
(단위 : 원) <table><tr><th>구분</th><th>철도 운임</th><th>선박 운임</th><th>항공 운임</th><th>자동차 운임</th><th>숙박비 (1박당)</th></tr><tr><td>제1호</td><td>1등급</td><td>1등급</td><td>정액</td><td>정액</td><td>실비</td></tr><tr><td>제2호</td><td>2등급</td><td>2등급</td><td>정액</td><td>정액</td><td>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td></tr></table>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실비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제1안】 (단위 : 원) <table><tr><th>구분</th><th>철도 운임</th><th>선박 운임</th><th>항공 운임</th><th>자동차 운임</th><th>숙박비 (1야당)</th></tr><tr><td><u>제1호</u></td><td><u>실비</u> (특실)</td><td><u>실비</u> (1등급)</td><td><u>실비</u></td><td><u>실비</u></td><td><u>실비</u></td></tr><tr><td><u>제2호</u></td><td><u>실비</u> (일반실)</td><td><u>실비</u> (2등급)</td><td><u>실비</u></td><td><u>실비</u></td><td><u>실비</u> (상한선 :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td></tr></table>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야당)	<u>제1호</u>	<u>실비</u> (특실)	<u>실비</u> (1등급)	<u>실비</u>	<u>실비</u>	<u>실비</u>	<u>제2호</u>	<u>실비</u> (일반실)	<u>실비</u> (2등급)	<u>실비</u>	<u>실비</u>	<u>실비</u> (상한선 :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실비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야당)																																
<u>제1호</u>	<u>실비</u> (특실)	<u>실비</u> (1등급)	<u>실비</u>	<u>실비</u>	<u>실비</u>																																
<u>제2호</u>	<u>실비</u> (일반실)	<u>실비</u> (2등급)	<u>실비</u>	<u>실비</u>	<u>실비</u> (상한선 :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제2안】 [별표]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제3조의2 관련) <table><tr><th>구분</th><th>준용</th></tr><tr><td>공무원</td><td><u>「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제1호</u></td></tr></table>	구분	준용	공무원	<u>「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제1호</u>																																
구분	준용																																				
공무원	<u>「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제1호</u>																																				

【자치법규안】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등

현 행	개선안(예시)
제5조(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생 략)	제5조(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u>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u> ② (생 략)

[타 기관 우수사례]

■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서울특별시시장의 여비지급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

② 시장 이외의 시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시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는 "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과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시장"으로 본다.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보며, "인사혁신처장"은 "시장"으로 본다.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영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영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분을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 나. 영 제29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 「울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에는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하게 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9.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공정성 확보

평가대상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등

■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지급대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지급심사 등) ① 포상금은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사, 의결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구 소속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심사는 해당 군·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재정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예산담당관, 인사과장, 납세협력담당관 회계담당관이 되며 간사는 체납정리 업무담당이 된다.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지급대상)

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급(시는 3급, 자치구 및 사업소 등은 4급 공무원)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강원도 「강원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8조(환수) ① 도지사는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지급한 포상금은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정누수 가능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지원되고 있거나 지원기준 등의 불명확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현황

○ 지자체의 지방세 체납액은 2021년 결산기준 총 3.4조원

- 지방세 탈루·체납자 은닉재산의 징수액에 따라 5~15% 포상금 지급

< 2021년 결산기준 지방세 체납액 현황 >

구분	계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기타
건수	34,189,455	61,635	1,170,216	3,692,139	7,028,946	22,236,519
세액 (백만원)	3,397,905	230,634	1,254,995	549,381	734,624	628,272
건별세액 (천원)	99	3,742	1,072	149	105	28

(출처 : 지방세통계연감)

○ 지방세기본법은 체납된 지방세 세입징수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은 조례로 위임

< 관계 법령 >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부과·징수에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② ~ ⑥ (생략)
-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포상금의 지급)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 문제점

- ① 징수포상금의 지급은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세입 증대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므로 사실상 체납징수 업무 실무를 하지 않는 국·과장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 서울시 등은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기준을 국장급 이상으로 정해 관리자에 해당하는 과장급을 누락
 - 부산시 등은 관리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규정이 없어 관리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
- ※ 관리자가 사익을 위해 실무자들의 체납 징수실적 또는 은닉재산 정보 등을 가로채는 개연성 상존

< 자체별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제한범위 규정 현황 >

구분	지자체 수	지자체 명
규정 없음	6개 시·도	부산,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경남
국장급 이상	3개 시·도	서울, 세종, 강원
과장급 이상	7개 시·도	대구, 광주,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

- ② 인천시는 특별한 공적이나 특별한 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 특별한 공적·노력에 대한 정의나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포상금 지급 결정 시 자의적인 해석과 재량권 남용 우려
- ③ 인천시 등은 위촉위원 없이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포상금 공적을 심의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 저해 우려
- 특히, 일부 시·도는 지방세 등과 관련성이 적은 인사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는 등 위원회 공정성·전문성 담보 곤란
- ④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자 등에 대해서는 환수 시 이자를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나
- 강원도 등은 행정청 과실로 인한 환수 시에도 이자를 가산하도록 하여 국민에게 불합리한 재정적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고
 - 일부 시·도는 환수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이자 가산 규정이 없어 재정 누수 우려

< 시·도별 세입징수 포상금 운영 현황>

구분	국·과장 제외	특별한 공적	공적심사 외부위원	환수 규정 정비
강원도	미흡			미흡
경기도	미흡			
경남도	미흡		미흡	
경북도			미흡	

구분	국·과장 제외	특별한 공적	공적심사 외부위원	환수 규정 정비
광주시			미흡	
대구시			미흡	
대전시	미흡		미흡	
부산시	미흡		미흡	미흡
서울시	미흡			
세종시	미흡			
울산시	미흡		미흡	
인천시	미흡	미흡	미흡	
전남도			미흡	미흡
전북도			미흡	미흡
제주도				미흡
충남도			미흡	
충북도			미흡	

□ 개선방안

- ① 서울시 등은 공무원에 대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을 관리자급(4급, 과장) 이상으로 규정
 - 필요 시 관리자라도 체납액 직접 징수 등 특별히 인정되는 공적이 있는 경우 지급 가능하도록 단서 추가
- ② 인천시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자의적인 해석·판단 등에 따라 좌우되거나 변동되지 않도록 지급기준 중 특별한 공적 또는 특별한 노력에 대한 정의 또는 부연 설명 조항을 마련하거나 해당 문구 삭제
- ③ 대전시 등은 포상금의 공적심사위원회 위원구성 시 심의의 공정성 담보가 가능한 위촉위원(외부 민간전문가) 반드시 참여 보장
- ④ 강원도 등은 당사자의 과실 없는 행정착오로 인한 포상금 환수 시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도록 개정
 - 부산시 등은 포상금 환수 규정을 신설하고, 전라남도 등은 현행 포상금 환수 규정에 거짓·부정한 자에 대한 이자 가산 규정 추가

【자치법규안】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등

현 행	개선안(예시)
제2조(지급대상)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급(시는 3급, 자치구 및 사업소 등은 4급 공무원)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지급대상)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장급(시는 4급, 자치구 및 사업소 등은 5급 공무원)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치법규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등

현 행	개선안(예시)
제2조(지급대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신 설 >	제2조(지급대상)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5호 중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 사업의 제한 나.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체납 또는

현 행	개선안(예시)
제6조(지급심사 등)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재정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예산담당관, 인사과장, 납세협력담당관 회계담당관이 되며 간사는 체납정리업무담당관이 된다.	<u>결손처분 자료의 제공</u> <u>다. 법 제111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u> <u>라.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u> <u>마.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제7조의4에 따른 출국 금지 요청 등</u> <u>바. 「지방세법」제131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領置)</u> <u>사.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u> 제6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② <u>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징수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u> <u>1. 해당부서 과장을 제외한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명</u> <u>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명</u> <u>③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

【자치법규안】 강원도 「강원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등

현 행	개선안(예시)
제8조(환수) ① 도지사는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지급한 포상금은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	제8조(환수) ① <u>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u>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u>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u>

현 행	개선안(예시)
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타 기관 우수사례]

■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지급대상)

- ⑤ 제1항 및 제4항에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4급 이상 공무원은 포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2명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3명
3.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명

제10조(환수)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10. 포상 대상자 적격성 제고

평가대상

포상조례 등

■ 충청북도 「충청북도 포상조례」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도의 국, 원, 실장, 시장, 군수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도지사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도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청북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 경상남도의회 「경상남도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

제16조(포상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6조의 감사장과 제7조의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형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 현황

- 각 시·도 및 지방의회는 시정 또는 사회 공헌 공적이 현저한 시민·소속 공무원 등의 포상을 위해 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 중
 - 포상은 표창장 및 상장·감사장 등으로 구별하며, 포상권자는 시·도지사로 하되, 포상 대상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포상 대상자에게 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수상자가 소속 공무원의 경우 승진, 전보 등의 인사상 우대 조치 부여

□ 문제점

- ① 포상 대상자 결정 절차인 공적심사를 '특별한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행정청 재량 행사의 구체성·객관성 결여 우려
 -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포상은 공정성·영예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바, 포상 대상자 선정 시 공적에 대한 심사는 반드시 필요
 - 공적심사를 '특별한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포상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의회의장이 임의로 표창장 등을 발급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며
 - 이 경우, 포상에 기반한 상금·부상, 인사상 우대 조치도 남용되게 되는 등의 문제 발생 우려
- ② 표창장 등의 제한 사유가 없어 포상에 부적절한 자(성범죄, 음주운전 등)가 포상을 받는 등 불합리한 상황 발생 가능
 - 포상은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사람, 타의 귀감이 되는 자 등에게 하는 것인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은 포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 ③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 등의 포상 취소 규정 부재로 취소 사유가 있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포상 취소를 못하는 등 소극 행정 유발 우려

- 정부 포상의 경우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등에는 포상을 취소하고 부상 등을 환수하도록 규정(정부 표창 규정 제18조)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의회의장의 포상에 대하여도 포상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 마련 필요
-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공적이 허위·거짓인 경우 취소 여부를 재량으로 두고 있는바, 중대한 위반 사유에 대하여는 당연 취소로 변경 필요

〈 시·도(의회) 별 포상 규정 현황〉

구분	공적심사 생략		포상 제외자		포상 취소	
	집행기관	의회	집행기관	의회	집행기관	의회
강원도			미흡	미흡	미흡	미흡
경기도	미흡			미흡		
경남도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경북도		미흡		미흡		미흡
광주시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대구시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대전시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부산시				미흡		미흡
서울시					미흡	미흡
세종시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울산시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인천시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전남도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전북도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제주도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충남도				미흡		
충북도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 개선방안

- ① 충청도 등은 포상 대상자 결정 시 공적심사를 임의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보완
- ② 강원도 등은 부적절한 자(성범죄, 음주운전 등)는 포상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 규정 마련
- ③ 대전시 등은 포상 취소 절차를 마련하고, 경상남도의회 등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취소를 재량이 아닌 당연 취소로 개선

【자치법규안】「충청북도 포상조례」

현 행	개선안(예시)
제10조(포상절차) ① (생 략)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청북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포상절차) ① (생 략) ② 표창장은 <u>충청북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u> 제10조의2(표창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표창 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 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이 정한 주요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3.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4.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5. 공무원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자 (모범공무원은 5년)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현 행	개선안(예시)
<신 설>	<u>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 <u>6. 그 밖에 도지사가 표창계획에 정하는 자</u> 제10조의3(포상취소) ① 제10조 따른 <u>공적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u> <u>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u> <u>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u> <u>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u>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u>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u> 다만, <u>상장의 경우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u>

【자치법규안】 「경상남도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

현 행	개선안(예시)
제16조(포상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u>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제16조(포상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포상을 취소해야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u> 1 ~ 3. (현행과 동일)

[타 기관 우수사례]

■ 「강원도 포상 조례」

제12조(포상절차) ① 제5조 부터 제7조에 따라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도의 실·국·원장, 시장·군수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도지사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다만, 도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서도 할 수 있다.

②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 경연입상 등 특별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충청남도 포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3(포상취소) ① 제10조 따른 공적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전라북도 포상 조례」

제10조(포상절차 및 기준)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도의 실·국·원장, 시장·군수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도민 20인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라북도공적심사위원회(이하"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포상 담당부서에서는 사법 및 수사기관의 범죄경력 조회 및 인사부서의 징계처분 사항에 대한 협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④ 포상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11. 정책연구용역 관리 강화

평가대상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구성)

⑥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의2(용역 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역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거나 외부전문가가 참석하는 용역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3조(성과평가의 실시) 도지사는 자체점검결과 위원회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한 용역에 대하여는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평가를 대학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평가기준 : 공개성, 이해충돌 가능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 현황

- 지자체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용역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
 - 용역 책임성 및 효율적 집행을 위해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용역 결과 평가 및 불량 연구자 제재 등을 규정

□ 문제점

-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는 용역추진 타당성, 예산 적정성, 결과 평가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위원 구성·운영의 공정성·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하나
 - 대전시 등 5개 시·도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촉위원의 구성 비율이 없어 위원 구성의 객관성 담보를 위한 외부위원 참여 보장이 미흡
 - 광주시는 부적격한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이 없어 심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
 - 전북도는 안전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만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회피의 경우 “회피할 수 있다”와 같이 임의규정으로 정하여 이해 충돌 방지 장치가 미흡
- 용역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연구용역 품질을 검증하고 부실 용역 수행자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 등을 강구하여 연구부정행위 등을 방지해야 함에도
 - 대전시, 전북도는 연구부정행위 등 용역결과 평가가 불량한 용역 수행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 제재 규정이 없어 책임성 확보 미흡

〈 시·도별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 현황 〉

구 분	용역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불량 연구자에 대한 제재 규정
	위촉위원 비율	제척·회피	
강원도	1/2 이상		
경기도	1/2 이상		
경남도	1/2 이상		
경북도	과반수 이상		
광주시	과반수		
대구시	과반수		
대전시	없음		없음
부산시	과반수		

구 분	용역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불량 연구자에 대한 제재 규정
	위촉위원 비율	제척·회피	
서울시	없음		
세종시	과반수		
울산시	과반수		
인천시	과반수		
전남도	과반수		
전북도	없음	미흡	미흡
제주도	없음		
충남도	없음		
충북도	과반수		

□ 개선방안

- ①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운영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 대전시 등 5개 시·도는 과반수 이상 위촉위원 참여가 보장되도록 개선
 - 전북도는 제척사유를 구체화하고 회피를 의무규정으로 개선
- ② 대전시·전북도는 용역결과 평가에 따라 결과가 불량한 용역 수행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 제재 규정 마련

【자치법규안 1】 전북도 등 9개 시·도

현 행	개선안(예시)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구성)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기업유치지원실장, 건설교통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u>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9인 이내의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u>	제5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기업유치지원실장, 건설교통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u>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9인 이내의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u>

현 행	개선안(예시)
④ ~ ⑤ (생략) ⑥ <u>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u> < 신설 >	<u>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u>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u>위원회에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u> <u>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자문·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u> <u>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u> <u>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u> ⑦ <u>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u>

【자치법규안 2】 대전시 등 2개 시도

현 행	개선안(예시)
「대전광역시 용역관리 조례」 제12조(학술용역결과의 평가 등) ① ~ ③ (생략) < 신설 >	제12조(학술용역결과의 평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위원회는 연구용역평가서의 평가결과가 미흡 또는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된 경우와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용역수행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용역수행자 선정시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한다.</u>

[타 기관 우수사례]

■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3.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정책연구용역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의3(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의6(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출석이 어렵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4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 ③ (생략)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 ⑥ (생략)

제9조의3(정책연구 윤리강화) ① 정책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용역 윤리 준수 서약서를 사전에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역수행자는 용역이 완료되면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유사도 검사결과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용역 윤리 자가점검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게 하여 용역부정행위(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중복게재 등)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의 평가 시 용역부정행위를 점검하여야 하고, 용역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용역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계약부서 및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시장은 향후 용역수행자 선정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0조(용역의 평가) ① 주관부서는 용역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용역완료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역결과 평가는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용역완료평가회를 개최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용역수행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평가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2. 금고 지정·운영 투명성 제고

평가대상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 3. (생략)

제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 심의·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금고의 지정절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의 평가기준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제3조의2(협력사업비 공개 등)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대전광역시 공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이해충돌 가능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공개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 현황

- 지방회계법은 지자체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은행을 지정 하도록 규정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안부)에 금고지정 방법·평가기준, 금고지정 절차, 금고약정 및 해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지자체는 법령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금고지정 방법, 금고신청 금융기관 제출자료 확인 및 평가 등 심의
 - 위원장(1인) 포함 9~12명 이내로 구성하고, 민간전문가는 과반수 이상 구성
-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에서 출연한 협력사업비¹⁾는 세입예산 편성 후 총액을 공개하고, 세출예산으로 편성 시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개

< 관계 법령 >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3]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평가 및 협력사업비 공개방법

- ① 자치단체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1) 협력사업비 :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입찰 시 지자체에 출연 또는 지원하기로 제시한 현금

② 협력사업비 공개 방법

- (금액 공개) 금고약정 개시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자치단체 공보(시보·도보·군보·구보)에 공개
- (세입예산 편성내역 등 공개)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

4. 금고의 지정절차

[1]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이상)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함
- 위원장 및 위원 선정, 위촉 기간, 위원 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2]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함
-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평가결과의 공개

- 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함

□ 문제점

- ①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 평가 및 금고 지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위원 구성뿐만 아니라 안건 심의 등에서도 공정성·객관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나,
 - 부산시는 민간전문가 비율을 행안부 예규(과반수 이상)와 달리 완화하여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저하 우려

- 대구시 등 12개 시·도는 금고지정심의위의 심의 안전과 관련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없어 이해충돌방지 장치 강화 필요
- ② 금고지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 등을 사전에 공고 및 통지하고, 제안서 제출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 경기도 등 10개 시·도는 금고지정 통지 또는 평가기준 교부·열람을 임의규정으로 정하여, 관련 정보가 일부 금융기관에만 제한적으로 제공될 소지가 있어 특혜 논란 가능성
- ③ 협력사업비는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 편성 시 집행내역을 공개 해야 함에도
 - 대전시 등 3개 시·도는 협력사업비 예산편성내역 및 집행내역에 대한 대외공개 의무를 규정하지 않아 불투명한 예산집행에 따른 부정 수령, 특혜·불공정 시비 등을 유발할 우려

〈 시·도 금고약정 관련 규정 현황 〉

구 분	금고지정심의위원회		①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통지 ② 금고평가 기준 교부열람	협력사업비 공개
	민간전문가 비율	제척·기피·회피		
강원도		회피 임의규정	② 임의규정	
경기도		제척 미흡, 기피 없음, 회피 임의규정	② 임의규정	
경남도				
경북도				
광주시				
대구시			② 임의규정	
대전시			② 임의규정	예산 편성내역 집행내역 공시 규정 미흡
부산시	1/2 이상		① 임의규정 ② 규정없음	
서울시		회피 임의규정	① 임의규정	
세종시				

구 분	금고지정심의위원회		①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통지 ② 금고평가 기준 교부·열람	협력사업비 공개
	민간전문가 비율	제척·기피·회피		
울산시			① 임의규정	
인천시		제척사유 미흡, 기피·회피 없음	② 임의규정	
전남도		제척사유 미흡, 기피 없음		
전북도				
제주도		회피 임의규정	① 임의규정	세입예산 편성내역 등 공시 규정 미흡
충남도			② 임의규정	세입예산 편성내역 공시 규정 없음
충북도				

< 관련 사례 >

◆ ‘○○○군 지정금고 협력사업비 편법 운용 논란’ (영남경제, ‘20. 3.)

- 협력사업비 5000~6000만원 세수 편입없이 민간단체 통해 편법운용
- 군수가 당연직 이사장으로 있는 (사)○○○군교육발전위원회는 2009년부터 금고인 농협으로부터 지역과 상생을 위한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적게는 4천만원에서 많게는 5천500만원까지 지난 11년간 4억9천만원을 기탁받았음

□ 개선방안

- ① 부산시는 민간전문가 위촉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개선하고 경북도 등 13개 시·도는 심의 운영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심의 안전과 관련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의 신설·보완
- ② 경기도 등 10개 시·도는 금고지정 통지 또는 평가기준 교부·열람을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 규정으로 개선
- ③ 대전시, 제주도, 충남도는 금고에서 제공하는 모든 협력사업비를 반드시 세입조치하고, 금고에서 출연한 협력사업비 총액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조치
 -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

【자치법규안 1】 13개 시·도

현 행	개선안(예시)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u>2분의 1 이상</u>이 되도록 한다. 1. ~ 3. (생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u>과반수 이상</u>이 되도록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u><신설></u> ② 위원회 심의·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u><후단 신설></u>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u>위원의 배우자·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u> ② 위원회 심의·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u>있고,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기피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평가에 참석하지 못한다.</u>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평가를 회피해야 한다.</u>

【자치법규안 2】 경기도 등 10개 시·도

현 행	개선안(예시)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금고의 지정절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u>금고의 평가기준을 교부</u> 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금고의 지정절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u>금고의 평가기준을 교부 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

【자치법규안 3】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등

현 행	개선안(예시)
제3조의2(협력사업비 공개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대전광역시 공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의2(협력사업비 공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대전광역시 공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u>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u>

[타 기관 우수사례]

■ 「경상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 「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

1. ~ 3. (생략)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기피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평가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협력사업비 공개) ① 도지사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도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금고(복수금고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도에서 예치한 금액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참조한 것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2.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직전 금고은행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의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

13.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공정성 제고

평가대상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이해충돌 가능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 현황

-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는 '22년 기준 **29,474개**이며, 운영 경비 예산은 **456억원**

< 2022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위원회수	연평균 개최수	운영경비	설치근거				
			법령		조례	규칙	기타
			강행	임의			
29,474	4	45,637	16,406	2,765	8,951	499	853

(2022 행정안전통계연보)

- 국가위임사무 또는 지방고유사무 수행을 위하여 자치단체 내에 인·허가 등의 심의·의결, 조정 등을 위한 각종 위원회 설치
 - (국가위임사무) 중앙부처 소관법령에 근거를 두고, 조례로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 ○○지자체 건축위원회(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지자체 건축조례) 등 **65%**(19,171개)
 - (지방고유사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위원회를 구성·운영
 - ※ 축제위원회, 기업유치위원회, 대중교통개선위원회 등 **35%**(10,303개)
- 각종 법령에서는 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설치 근거,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이해충돌 방지 장치, 해촉기준 등을 제시

< 관계 법령 >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 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獨自性)이 있을 것
 4. 업무가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을 것
- ②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행정기관의 장(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중 그 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운영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대상 위원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除斥)·기피·회피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제8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설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령입안·심사 기준」 제5장 실체규정 22. 위원회

- 의결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는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결격사유, 벌칙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에 관한 규정을 둔다.

□ 문제점

①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참여 배제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없거나 미흡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저하 우려

- 일부 조례는 안건 당사자가 기피를 신청한 경우, 기피 여부 결정에 대한 규정이 없어 기피 신청만으로도 특정 위원이 심의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오인 또는 남용될 수 있으며,
- 제척사유 등이 있는 위원은 당연히 회피를 해야 함에도 재량으로 규정

② 직무상 비위를 저지른 자 등의 해촉 규정 부재로 해촉 사유가 있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해촉을 못하는 등 소극행정 유발 우려

- 개별 안건의 이해충돌방지(제척·기피·회피) 외에도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자 등은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어야 하므로

- 해촉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해촉할 수 있는 규정 마련 필요

□ 개선방안

- ① 강원도, 경기도, 전북도는 위원회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참여 배제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신설
 - 대구시는 기피 규정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선
 - 전남도는 제척 사유 등이 있는 경우의 회피를 재량이 아닌 당연 규정으로 개선
- ② 대전시는 직무상 비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한 해촉 규정 신설

【자치법규안1】 강원도 등 5개 시·도

현 행	개선안(예시)
< 신 설 >	<u>제○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u> <u>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u> <u>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u> <u>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u> <u>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u>

현 행	개선안(예시)
	<u>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u> <u>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u> <u>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u>

【자치법규안2】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선안(예시)
< 신 설 >	<u>제○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u> <u>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u>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u> <u>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u>4. 제○조제1항(앞의 제척 사유를 인용하는 조항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u> <u>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u>

[타 기관 우수사례]

■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14. 지방행정동우회 보조금 누수 차단

평가대상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 「제주특별자치도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사업) 제주특별자치도지방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정 발전을 위한 사업
2. 도정시책의 연구·개발사업
3. 도정에 관한 자문 또는 협조사업
4. 지역사회의 발전 및 도정역점 추진사업 지원
5.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
6. 그 밖에 행정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행정동우회에 대하여 제2조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 육성지원조례」

제2조(보조사업) 행정동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행정발전과제의 조사·연구와 회보 발간
2. 지역사회현안문제의 의견수렴과 시정홍보
3. 민원상담과 주요시책 자문
4. 대전사랑운동 실천을 위한 각종 추진사업
5.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본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행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행정동우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준용)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재정누수 가능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지원되고 있거나 지원기준 등의 불명확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현황

- 지방자치단체의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지방행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시행('20.3.31.)
- 동우회의 설립·회원 자격 등과 함께 동우회가 지방행정 발전, 공익 봉사 관련 사업을 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

< 지방행정동우회법 주요 내용 >

◆ 제정이유

- 전직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 마련

◆ 주요내용

- (회원 자격) 지자체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정회원) 및 동우회에서 위촉한 자(명예회원)
- (사업) 1. 지자체간 협력 증진, 2. 지방행정 발전, 3. 공익 봉사, 4. 회원 친목 도모, 5. 회원 복지 증진, 6. 그 밖에 동우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재정 지원) 2호 및 3호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감독) 보조금 지급 시 서류 제출 명령 등 필요한 조치 가능

-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개별 조례를 마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동우회를 운영·지원(보조금 등)
- 시·도는 제주도, 전남도 등 총 8개 기관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강원도, 경기도, 대전시, 인천시, 전남도, 전북도, 제주도, 충남도)
- 시·도에 편성된 예산 규모는 최대 5천만원이며, 내역으로는 '지방

행정 자문 및 시정홍보 활동 지원' 등

(‘23년도 예산서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서		비고
	편성액	내역	
강원도	43,000	- 강원사랑 운동 전재 -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 사회공익증진 회보 발간	
경기도	-	-	편성 내역 없음
대전시	14,000	- 환경정화활동, 시정발전포럼 - 회지발간	
인천시	50,000	- 지방행정 자문 및 시정홍보활동 지원	
전남도	40,000	- 전라남도 행정동우회 활동 지원	-
전북도	18,000	- 정보화 확산 컴퓨터 교육	-
제주도	-	-	편성 내역 없음
충남도	20,000	- 퇴직공무원 사회공원 사업 지원	-

□ 문제점

- ① 지방행정동우회법에서 정한 지원대상을 벗어나는 사업을 조례로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재정누수 가능성 존재
 - 동우회 관련 조례는 각 시·도별 특성이나 실정에 맞게 운영하되 지방행정동우회법의 범위 내에서 규정되어야 하고,
 - 법률은 2개 사업(지방행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 일부 시·도는 ‘시책 연구개발사업’,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 ‘그 밖에 필요한 사업 등’ 포괄적으로 규정
 - 특히,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은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 동우회가 운영될 여지가 커지며, 이를 계기로 부정청탁 등이 발생할 우려
- ②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재정지원은 사업비에 한정되고, 지방보조금법, 비영리단체법도 보조금은 사업비에 한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지방행정동우회법 입법 과정에서 동우회 사업비 외에 운영비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20.3.6.)

- 일부 시·도는 '행정동우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등으로 명시하여 입법 취지와 다르게 운영비(사무실 임차료 등)를 지원할 여지

※ OO시 행정동우회가 OO시 △△도서관 1층에 행정동우회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실버 컴퓨터 교육' 목적의 지방보조금으로 사무실 임대료로 지출('22.9.24. 헤럴드 경제)

③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환수 여부를 행정청의 재량으로 규정하여 재정누수 우려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은 중대한 위법 사항에 해당하여 당연히 환수되어야 하나(지방보조금법 제34조),
- '반환하게 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행정청에 재량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고, 강원도는 환수 규정이 부재

< 시·도별 행정동우회 지원 규정 현황 >

구분	보조금 대상 사업	보조금 지원 범위	보조금 환수
강원도			미흡
경기도			
대전시	미흡	미흡	
인천시	미흡		
전남도			미흡
전북도	미흡		
제주도	미흡	미흡	
충남도	미흡		

□ 개선방안

- ① 제주도, 충청남도 등은 재정지원 대상에서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 ‘그 밖에 필요한 사업’ 등의 상위 법에 어긋나는 사항을 삭제하여 재정누수 예방
- ② 대전시·충남도는 동우회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만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선
 - ※ 일부 시·도의 경우 「지방행정동우회법」의 제정·시행('20.3.31.)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조례의 전부개정 등도 검토 필요
- ③ 강원도·전남도는 보조금 환수를 재량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개선하고, 강원도는 환수 규정 신설(또는 보조금 관리 조례의 준용 규정 마련)

【자치법규안1】「제주특별자치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선안(예시)
제2조(사업) 제주특별자치도지방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u>도정 발전을 위한 사업</u> 2. <u>도정시책의 연구·개발사업</u> 3. <u>도정에 관한 자문 또는 협조사업</u> 4. <u>지역사회의 발전 및 도정역점 추진사업 지원</u> 5. <u>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u> 6. <u>그 밖에 행정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u>	제2조(사업)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u>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u> 2. <u>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u> 3. <u>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u> 4. <u>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u> 5. <u>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u> 6. <u>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u>
제3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행정동우회에 대하여 제2조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동우회에 대하여 <u>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u>

【자치법규안2】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 육성지원조례」

현 행	개선안(예시)
제2조(보조사업) 행정동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행정발전과제의 조사·연구와 회보 발간 2. 지역사회현안문제의 의견수렴과 시정홍보 3. 민원상담과 주요시책 자문 4. 대전사랑운동 실천을 위한 각종 추진사업 5.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본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조(지원사업) 대전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우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시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제4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행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행정동우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자치법규안3】 전라남도 「전라남도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현 행	개선안(예시)
제7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동우회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환수) 도지사는 동우회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거나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타 기관 우수사례]

■ 「전라남도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제5조(지원사업)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동우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도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동우회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경비조달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 ③ 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정산서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사업)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지방행정 및 자치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도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재정) ① 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정관 또는 회칙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 ② 도지사가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준용)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15.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심의 공정성 확보

평가대상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관리 조례 등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위촉기간 중 위원 본인의 미술작품 출품금지 규정 없음

□ 평가기준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이해충돌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 현황

- 문화예술진흥법은 1만㎡ 이상 대형 건축물은 신·증축 시 건축비 1% 이하 범위에서 미술품을 설치하도록 규정
 - 미술작품 감정·평가,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 등 심의를 위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
- '21년 기준 건축물 미술작품 거래규모는 약 970억원으로, 전체 미술시장 총 거래금액의 12.8%에 달하며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

〈 건축물 미술시장 거래 규모 〉

(단위: 년, 백만원)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건축물 미술시장	62,051	58,718	51,017	34,323	36,805	87,932	106,454	97,361	96,537	97,092
전체 미술시장	440,518	324,927	349,646	390,382	396,469	494,243	448,224	414,673	384,859	756,27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2022 미술시장조사, '22.12)

< 관계 법령 >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2(미술작품의 설치 절차·방법) ① 건축주는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절차, 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미술작품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미술·건축·공공디자인·조경·안전·유지관리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②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물미술작품의 가격
2. 건축물미술작품의 예술성
3. 건축물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 문제점

○ 미술작품심의위는 건축물에 설치될 미술작품의 가격을 감정·평가하고, 설치 적정성 등을 판단하므로 이권개입 방지를 위한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 강원도, 세종시 등 14개 시·도는 심의위원이 위촉기간 중 본인 작품을 출품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부당한 사익 추구 우려

* 미술작품 심의 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배제 등 이해충돌방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정 분야의 소수 전문가그룹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인 점과 친분 등을 통해 서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충돌방지(제척·기피·회피) 제도만으로 심의위원이 출품한 작품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담보하기 어려움

○ 심의 공정성·객관성이 요구되는 위원회는 장기연임에 따른 부작용 차단을 위해 위촉 기간 및 연임제한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나

- 세종시는 심사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면서 연임제한 규정은 두지 않아 재위촉을 통해 무제한 연임이 가능해 특정 위원 특혜 부여 및 다른 전문가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소지

〈 지자체별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 규정 현황 〉

	관련 규정	연임 내용	임기 중 출품제한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5조	2년, 1회	없음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1년, 연임 불가	제10조제1항
경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25조	2년, 1회	없음
경북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5조	2년, 1회	없음
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20조	2년, 1회	제23조제6항
대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20조	2년, 1회	없음
대전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7조	2년, 1회	없음
부산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30조	1년, 2회	제30조의6
서울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	1년, 1회	없음
세종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조례 제8조	2년, 연임 제한 없음	없음
울산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	2년, 1회	없음
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조례 제8조	1년, 1회	없음
전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	1년, 1회	없음
전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	2년, 1회	없음
제주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9조	2년, 1회	없음
충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23조	비상설	해당없음
충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	2년, 2회	없음

< 언론 보도 >

◆ 대형건축물 미술작품 의무설치 '1%법' 이대로 좋은가'(20.1.14. 영남일보)

- ○○시의 경우 조례에 따라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는 ... 50여명을 인력풀로 구성해 10명 내외의 위원이 윤번제로 심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해당 심의위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심의위원이 버젓이 출품에 나서는 등으로 사실상 '셀프 심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 개선방안

- ① 강원도 등 13개 지자체는 미술작품심의위 위원은 임기 또는 위촉 기간에는 본인의 작품 출품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
- ② 세종시는 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 추가

【자치법규안】「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선 예시
제8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③ (생략)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u>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u>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u>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고,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위촉기간 중에는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에 작품을 출품할 수 없다.</u> ⑤ <u>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레만 연임할 수 있다.</u>

[타 기관 우수사례]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 제30조(위원회 구성)**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업무 담당과장 및 건축주택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모 또는 추천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미술·건축·환경·공공디자인·조경·안전·유지관리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로 해당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그 밖에 미술작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명단은 공개할 수 있다
- 제30조의6(미술작품의 참여 금지)**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위촉 기간 중 부산광역시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에 참여할 수 없다.

16.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정기준 명확화

평가대상

문화예술진흥조례 등

■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3조(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이상 1천분의 7 이하
2. 영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 건축물(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이상 1천분의 7 이하

□ 평가기준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예측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 현황

○ 문화예술진흥법은 1만㎡ 이상 대형건축물 신·증축 시 건축비 1% 이하 범위에서 미술품을 설치하도록 규정

- 법령은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건축물 종류별·구역별 금액산정 비율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 미술작품설치비 = 건축면적 × 법정 표준건축비 × 시·도조례가 정하는 비율

〈 시·도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현황 〉

(단위 : 백만원, 점)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설치금액	97,092	1,760	13,046	7,746	9,610	7,738	4,398	541	4,523
설치작품수	672	13	88	62	78	36	22	2	28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설치금액	32,633	4,343	3,019	-	2,774	-	1,470	3,492	-
설치작품수	207	37	16	-	24	-	19	40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2022 미술시장조사, '22.12)

< 관계 법령 >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 제2항에 따른 건축비용, 기금 출연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의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한다.
- ⑤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건축물미술작품 사용금액(제12조제5항 관련)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7. 19.>

건축물미술작품 사용금액(제12조제5항 관련)

1.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이상 1천분의 7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건축물 소재지	건축물미술작품 사용금액
가. 시(자치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u>건축비용의 1천분의 5 이상 1천분의 7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u>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1)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2)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연면적 2만 제곱미터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2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 건축비용의 1백분의 1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문제점

- 문화예술진흥법령은 미술작품 설치비용에 산정방식을 정하면서 구체적인 산정비율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나
 - 강원도 등 3개 시·도는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정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법령에서 제시한 산정비율 범위를 그대로 반영하여
 - 비용산정에 있어 행정청의 재량에 의한 사안별 설치비용 차등이 가능해 특혜 발생 소지

< 공동주택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정 예시(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2) >

- ▶ 아파트 단지 1개(건축면적 10만㎡ 신축 시 산정비율에 따라 최대 약 8배 차이

* 미술작품설치비 = 건축면적 × 법정 표준건축비(2,257천원/㎡) × 시·도조례가 정하는 비율

- 10만㎡ × 2,257천원/㎡ × **1/1000** = 2.2억원

- 10만㎡ × 2,257천원/㎡ × **7/1000** = 15.7억원

□ 개선방안

- 강원도, 경상도, 경북도는 법령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비율을 규정

【자치법규안】 강원도(「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등 3개 시.도

현 행	개선안(예시)
제13조(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 <u>건축비용의 1천분의 1 이상 1천분의 7 이하</u> 2. 영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 건축물(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 <u>건축비용의 1천분의 5 이상 1천분의 7 이하</u>	제13조(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 <u>건축비용의 1천분의 0</u> 2. 영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 건축물(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 <u>건축비용의 1천분의 0</u>

[타 기관 우수사례]

■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비용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단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 건축비용의 1천분의 2
2. 영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6

■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9조(미술작품 설치를 위한 건축비용의 비율) 영 별표 2 제1호 및 제2호가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군 지역 포함): 1,000분의 1
2. 공동주택외의 건축물 중 군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1,000분의 5

17.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책임성 강화

평가대상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 제8조(건설공사 부실시공의 신고 등)**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 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자는 시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건설공사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모사전송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를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는 건설공사의 명칭과 부실시공의 시기·위치·내용 등 부실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 제7조(부실시공 신고·접수)** ①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시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별지 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 모사전송(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 ③ 센터는 부실시공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 한다.

제14조(포상금 지급의 제한) 시장은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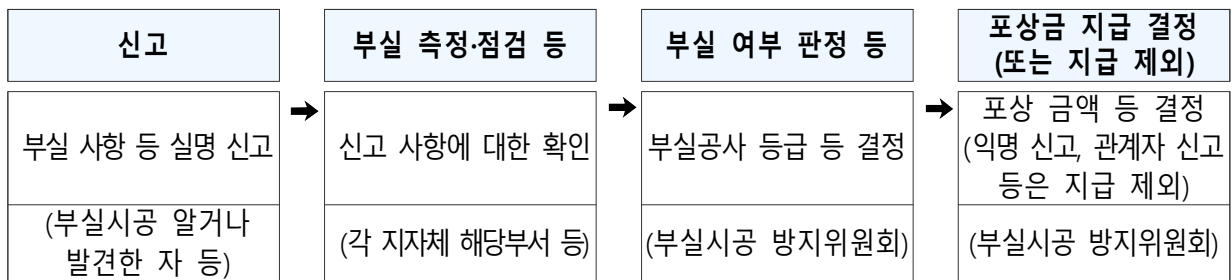
1. 준공 완료된 건설공사의 경우
2. 공무원, 감리원, 시공사 등 공사관계자가 신고하는 경우
3.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가 재직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경우
4.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5. 신고가 접수되기 이전에 발주청이나 감리원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중에 있는 경우

□ 평가기준 :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준수부담의 합리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형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준수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인지 여부

□ 현황

-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조기 발견 및 신속한 조치를 위해 부실 공사 방지와 관련된 조례를 운영 중
 - 해당 조례는 시·도 또는 시·도가 설립한 공사·공단인 발주한 공공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되며
 -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 방법, 신고 사항에 대한 확인 및 부실시공 판정,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 ①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신고 기한의 지나친 제한(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으로 담당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유발할 우려 존재
 - 해당 조례는 신고를 통한 부실시공 방지·조치 등이 목적이므로 신고의 접수 및 이에 따른 처리가 행정상 중요사항이나
 - 일부 시·도는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신고만을 접수하도록

규정, 그 이후 발견한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접수를 제한하여, 건설공사 특성상 준공일 1년 이내에 발견할 수 없는 부실공사는 신고·접수조차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우려

- 이 경우 조례 근거 부재로, 신고된 부실시공에 대해 점검하지 않는 등 담당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유발

※ 경기도 등은 신고 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공사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규정

- ② 신고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준공이 완료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을 불합리하게 규정해 신고자의 포상금에 대한 예측가능성 침해 우려

- 신고 기한 내에 실명으로 한 신고가 부실시공으로 밝혀진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고, 이때의 신고 기한은 준공일로부터 일정 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을 의미함에도
- 일부 시·도는 '준공 완료된 건설공사의 경우'를 신고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으로 규정하여
- 신고자가 마땅히 포상금을 받아야 할 권리 침해 및 신고를 통한 부실시공 방지라는 조례 취지를 훼손

□ 개선방안

- ① 충청도 등은 부실공사 신고 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 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정하는 등 신고 기한 개선

※ 강원도, 경북도, 부산시, 세종시, 울산시, 인천시, 전남도, 충청도

- ② 인천시는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에서 '준공 완료된 건설공사의 경우'를 삭제

【자치법규안1】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8개 시·도)

현 행	개선안(예시)
제8조(건설공사 부실시공의 신고 등)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를 하는 자 (이하 "신고자"라 한다)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접수 하지 아니한다.	제8조(건설공사 부실시공의 신고 등)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를 하는 자 (이하 "신고자"라 한다)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u>신고 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u>

【자치법규안2】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현 행	개선안(예시)
제7조(부실시공 신고·접수)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 한다. 제14조(포상금 지급의 제한) 시장은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준공 완료된 건설공사의 경우 2. ~ 5. (생 략)	제7조(부실시공 신고·접수)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해당 <u>신고 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u> 제14조(포상금 지급의 제한) 시장은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 삭 제 > 2. ~ 5. (현행과 동일)

[타 기관 우수사례]

■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제9조(부실공사 신고·접수)

- ⑤ 부실공사 신고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제11조(신고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시 또는 시가 출자한 공사·공단이 발주한 공사비 1억원이상 및 시가 인·허가한 6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중 또는 준공 이후 해당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부실공사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신고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시공 허용오차의 범위로서 부실시공으로 판정되지 않은 경우
2. <삭제>
3. 제3조에 따른 센터에 신고접수 전에 감독공무원 및 감리자 등에게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조치 계획 중인 경우
4. 신고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공사관계자와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18. 사·도립 예술단 채용·운영 공정성 제고

평가대상

사·도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등

■ 「울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자격과 위촉) ① 예술단체의 지휘자, 안무자, 부지휘자, 지도자, 악장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제7조(전형위원)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단위 위촉시의 전형, 평정을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 시 예술단체의 전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전형위원은 분야별로 4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해당 분야에 관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다만, 울산광역시립교향악단의 전형위원은 악기군별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전형의 방법) ①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의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실시할 수 있다.

■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제8조(전형방법) ① 공개전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

2.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평가기준 : 공개성, 이해충돌 가능성, 특혜발생 가능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 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현황

- 지자체는 예술단 설치·운영 관련 조례를 통해 교향악단·국악단·무용단·발레단·합창단 등 다양한 예술단을 설치·운영

- 대부분 예술단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술단 업무, 공연 기획, 단원 해촉·심사 등의 업무를 담당

< 국공립 예술단 현황 >

(단위 : 개, 명)

계	계	국립	공립(광역)	공립(기초)
단체수	360	14	68	278
종사인원	4,835	379	1,297	3,159

(문화체육관광부, '2022 공연예술조사' 보고서, '22.12.)

- 조례에는 예술단 구성,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단원 채용을 위한 전형방법, 위촉 및 해촉 등에 관해 규정

< 관련 법령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훈련대상자의 모집, 훈련의 실시 및 취업지원 등을 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훈련생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문제점

- ① 신규 채용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채용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고, 명확한 채용기준을 통해 채용 비리 가능성을 차단해야 함에도

- 울산시 등 6개 시·도는 예술감독·지휘자·안무가·악장 등 직책이 있는 단원의 채용방식을 추천방식으로만 규정하거나 명확히 규정

하지 않아 인맥에 의해 특정 개인·단체 등에 특혜 부여 가능성

※ 특별전형 방식을 통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자 등으로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거나, 모집 단계에서부터 추천·자문 등 비공개적 방식으로 운영 하는 것은 채용 응시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불공정 발생

- 대전시는 공개전형 사유로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여 직원 채용이 자의적으로 운영될 소지
- 강원도 등 4개 시·도는 특별전형 사유로 입상경력자 등 실력이 우수한 자 외에 “단장이 추천한 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 등 불명확한 요건을 규정하여 사적 채용 유발 우려

② 연간 기본계획 수립, 공연 기획, 직책단원 위촉 또는 심의, 단원 해촉·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운영위원회와 단원 공개채용을 위한 전형위원은 강한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 경남도 등 8개 시·도는 심의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운영위원회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없어 사적 이해관계 개입 가능성
- 예술단이 설치된 13개 시·도 모두 단원 채용을 위한 전형위원회에 대해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없어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 미흡

〈 시·도립 예술단 채용 관련 규정 현황 〉

구분	전형(채용)방식				제척·기피·회피	
	지휘자 등· 직책단원	예술단원	사무 단원·직원	특별전형	운영위	전형위원
강원도	공개전형	공개전형	특별전형	국내외 입상경력자, 위촉기간 만료자 중 실적 우수자, 사무 단원으로 단장이 추천한 자	없음	없음
경남도	공개모집	공개전형	공개전형		없음	없음
경북도	공개전형	공개전형	공개모집	국내외 입상경력자, 국내외에서 우수한 실력이 인정되는 자	운영위 없음	없음
광주시	공개모집	공개전형	공개전형	국내외에서 우수한 실력이 인정 되는 자	-	-
대구시	감독심사위 심사	공개전형	공개전형	외국인 국내외 입상경력자, 상임	운영위 없음	없음

구분	전형(채용)방식				제척·기피·회피	
	지휘자 등· 직책단원	예술단원	사무 단원·직원	특별전형	운영위	전형위원
				단원 승진 위촉 시		(감독심사위 포함)
대전시	단장 위촉 * 전형방식에 관한 규정 없음	공개전형 * 결원 보충,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내외에서 우수한 실력이 인정 되는 자	있음	없음
부산시	없음	공개전형	공개전형	국내외에서 우수한 실력이 인정 되는 자	없음	없음
세종시	공개전형	공개전형	공개전형	-	운영위 없음	없음
울산시	운영자문위 자문	공개전형	공개전형	국내외에서 우수한 실력이 인정 되는 자, 예술분야 식견 행정능 력 인정되는 자를 직원으로 시장이 위촉	없음	없음
인천시	운영자문위 추천	공개전형	공개전형		없음	없음
전남도	공개전형	공개전형	-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대통 령상 이상 수상자	없음	없음
전북도	공개모집	공개전형	-	필요 시 전형위원 심의	없음	회피 미흡
제주도	공개전형	공개전형	공개전형	국내외에서 우수한 실력이 인정 되는 자, 공개전형 시 지원자 없는 경우, 국내외 입상경력자, 각 운영의 기관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운영위 없음	없음
충북도	전형위 심의추천	공개전형	공개전형	국내외에서 우수한 실력이 인정 되는 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없음	없음

* 예술감독, 지휘자, 안무가 등

< 언론 보도 >

- ◆ ○○ 문화기관 연이은 내정설에 예술계 ‘기대반 우려반’(22.11.19. 중부매일)
 - “지역사람 키워야” vs “책임자 없어”
 - ○○도립교향악단 예술감독 ‘추천제’ 전환 3명 후보자를 추천받음
도는 이와같은 방식에 대해 “그간은 관례대로 공개모집으로 진행했을 뿐 조례에
는 추천제로 명시돼 있다”고 답함

□ 개선방안

① 단원 채용 시 공정한 채용 기회가 보장되도록

- 울산시 등 6개 시·도는 직책이 있는 단원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도록 채용방식 개선
 - ※ 신규채용의 경우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자격·기술 등이 필요한 경우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제한경쟁방식을 병행
- 대전시는 공개전형 사유 중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제 또는 구체화
- 강원도 등 4개 시·도는 특별전형 사유 중 “단장이 추천한 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 불명확한 요건 삭제

② 위원회 구성·운영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 경남도 등 8개 시·도는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운영위원회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 경기도·서울시·충남도를 제외한 13개 시·도는 전형위원회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자치법규안 1】 울산시 등 6개 시·도

현 행	개선안(예시)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자격과 위촉) ① 예술단체의 지휘자, 안무자, 부지휘자, 지도자, 악장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u>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u> 시장이 위촉한다.	제6조(자격과 위촉) ① 예술단체의 지휘자, 안무자, 부지휘자, 지도자, 악장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u>공개전형(또는 공개모집)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되 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실시할 수 있다.</u>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제8조(전형방법) ① 공개전형은 다음 각 호	제8조(전형방법) ① 공개전형은 다음 각 호

현 행	개선안(예시)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 1. 결원이나 증원에 따른 단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 1. 결원이나 증원에 따른 단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u><삭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유를 구체화</u>
「강원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제7조(전형) ① ~ ② (생략) ③ 특별전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권위있는 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경력이 있는 사람 2.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 중 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사무단원으로 단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8조(전형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전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권위있는 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경력이 있는 사람 2.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 중 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u><삭제></u>

【자치법규안 2】 14개 시·도

현 행	개선안(예시)
「경상남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운영위원회) ① ~ ⑤ (생략) <u><신설></u>	제4조(운영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1안】 <u>⑥ 기타 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u> *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있는 경우 【제2안】 <u>⑥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u> <u>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u>

현 행	개선안(예시)
제6조(전형위원회) ① ~ ③ (생략) <신설> ④ (생략)	<u>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u> <u>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u> <u>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u> <u>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u> <u>⑦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u> <u>⑧ 위원이 제5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u> 제6조(전형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6항(제1안) 또는 제4조제6항에서 제8항까지의 규정(제2안)을 준용한다.</u> <u>⑤ (현행 제4항과 같음)</u>

[타 기관 우수사례]

■ 경북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자격과 위촉) ① 국악단과 교향악단의 지휘자와 악장 그리고 무용단의 안무자를 포함한 단원은 해당 예능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량을 갖춘 사람 중 공개전형을 통하여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직원은 예술분야에 식견이 풍부하고 행정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전형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외국인
2. 국내·외 유명예술대회 입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국내·외에서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전형위원회) ① 단원위촉을 위한 전형, 예능도 평정심사를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둔다.

- ② 전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전형방법) ①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할 수 있다.

- ② 공개전형 및 채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대전시립예술단 조례

제4조(운영위원회) ① ~ ④ 생략

- ⑤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⑥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⑦ 위원이 제5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9.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우선계약자 선정기준 명확화

평가대상 법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등

■ 강원도 「강원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도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하며 각 호 중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설치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계약신청서(설치자가 정한 소정양식)
2.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자 증명서

<생 략>

제6조(우선계약 등) ① 설치자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장애인 등에게 우선하여 계약하되 1명 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설치자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제5조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 우선순위는 신청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 전라남도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제5조 (우선허가) 도지사가 제4조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에게 허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더 어려운 사람에게 허가한다.

□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현황

- 각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주민 등을 공공시설 내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자로 우선 계약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운영
 - 우선계약자 신청이 2명 이상일 경우 순위 선정기준을 조례 또는 별표로 정함

□ 문제점

- 강원도는 매점 및 자판기 설치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 우선 순위를 규칙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훼손
 - 전남도는 장애인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생활이 더 어려운 사람에겐 허가”하도록 합리적 기준없이 모호하게 규정해 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재량권 남용 및 특혜 발생 소지
- 서울시, 광주시, 대구시는 조례 별표와 조문에 계약 우선순위는 있으나
 - 우선순위의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우선계약자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계약자 선정에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한계

□ 개선방안

- 강원도와 전남도는 명확한 우선순위의 기준을 정하는 규칙을 제정하거나 모호한 선정기준을 삭제하는 등 조례 정비
- 서울시, 광주시, 대구시는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객관적인 계약자 우선 선정기준을 조례에 반영

【자치법규안】 「강원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현 행	개선안(예시)
제6조(우선계약 등) ① 설치자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장애인 등에게 우선하여 계약 하되 1명 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설치자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제5조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 우선순위는 신청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우선계약 등) ① 설치자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장애인 등에게 우선하여 계약 하되 1명 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설치자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제5조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이 정한다.

【자치법규안】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현 행	개선안(예시)
[별표] ※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 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 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u><신 설></u>	[별표] ※ (생략) 1.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한다. 가.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 나.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자 다.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타 기관 우수사례]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제6조(우선계약) ① 시장 등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우선계약 순위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시장 등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동해시 「동해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6조(우선계약) 공공시설의 장이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 순위는 별표와 같이 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공공시설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계약 우선순위(제6조 관련)

순위	장 애 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1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	미과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한 자	미과세대상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3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생활이 곤란한 사람

※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한다.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자
3.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20.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평가대상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사유발생시마다 개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강원도의회 의원과 도 관계공무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1조(심의위원회)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경기도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부위원장과 위원은 공무원이나 도의회 의원,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가 끝난 후에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의 수는 총 재적위원 중 2명 이내로 한다.

제15조(처리상황의 지도·점검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도·점검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민간위탁사무를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을 발견하면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평가기준 :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이해충돌 가능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각종 민간단체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 현황

- 전국 233개 지자체에서 9,652건(광역 1,005건, 기초 8,647건), 약 5조 4백억 규모 예산의 민간위탁사업 운영²⁾
 - 민간위탁사업 유형별로 사회복지분야가 41.5%(3조3백억), 환경보호 분야 30.6%(2조24백억), 문화· 분야 7.7%(5천6백억)로 높은 비중 차지³⁾

< 전국 지자체(233개) 민간위탁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사업 수	사업 총 예산	사업별 평균예산
계	9,652	5,042,669	522
특·광역시	289	213,799	739
도	716	1,106,407	1,545
시	3,161	1,656,963	524
군	2,442	695,486	290
구	3,044	1,342,511	441

- 지자체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근거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의 사무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 가능
 - 이에 따라 전국 243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사무의 민간 위탁을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제정·운영
-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과정은 크게 민간위탁 준비 단계 - 진행단계 - 이후(사후관리)단계로 구분

2) 「2016 민간위탁 운영현황 분석 I」 (2017,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자료 인용. 단 부산, 울산, 충남, 경기도 광주시/양주시, 경북 군위군/영덕군/울릉군, 경남 의령군(총 10개 기관)은 자료 미제출 기관으로 현황에서 제외.

3) '14년도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준(「2016 민간위탁 운영현황 분석 I」 (2017, 한국 민간위탁경영연구소) 자료 재구성)

< 민간위탁 업무 흐름도 >



< 관계 법령 >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문제점

- ①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과정에 심의위원 구성과 이해관계인 참여를 배제하는 등의 절차가 중요하나

- 강원도, 경남도, 대전시, 부산시, 제주도는 외부 위촉위원에 대한 구성비율이 없거나 낮아 내부위원 위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 심의·의결과정에 공정성·객관성이 훼손될 우려
 - 강원도, 세종시, 전북도, 충남도, 충북도는 위원 자격요건을 규정하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해 지명권자의 자의적인 위촉이 가능함에 따라 지명권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구조로 운영될 우려
 - 세종시는 위원회 심의안건과 관련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 참여 배제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근거가 없거나 미흡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곤란
- ② 전남도는 수탁기관에 대한 의무사항을 정하지 않아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목적 외로 무분별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책임성 강화 필요
- ③ 지자체장은 당해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뿐만 아니라 감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하고,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함에도
- 강원도, 충남도는 수탁기관 감사를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도록 재량적으로 규정해 관리·감독에 대한 통제장치가 부족

〈 시·도별 민간위탁 관련 규정 현황 〉

구 분	외부위원	위원 자격요건 구체화	이해충돌 방지	수탁기관 감사 의무화
강원도	없음	없음		임의규정
경기도				
경남도	미흡(1/2)			
경북도				
광주시				
대구시				
대전시	없음			

구 분	외부위원	위원 자격요건 구체화	이해충돌 방지	수탁기관 감사 의무화
부산시	미흡(1/2)			
서울시				
세종시		없음	없음	
울산시				
인천시				
전남도				
전북도	공무원 3/10 이하	없음		
제주도	미흡(1/2)			
충남도		없음		없음
충북도		없음		

< 언론사례 >

- **동구청, 민간위탁 사업관리 부실한 이유..미흡하고 허술한 조례도 한몫 (대구일보, '22.4)**
 - 대구 동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만 있을 뿐 관리·감독에 관한 조항이 빠져 있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 및 위원회 관련내용은 전무함
- **지자체 민간위탁사업 '허점투성이'...감사원 "재정낭비" (아주경제, '20.7.)**
 - 부산시는 청년들의 해외취업 지원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도·감독을 부실하게 해 사업 수혜자 총 554명 중 134명이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과 중복으로 해외취업 지원사업에 참여해 5억3,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됨
- **목포시 삼학도 요트마리나 민간위탁사 선정 '논란' (연합뉴스, '21.11.)**
 - 마리나 개장 이후 12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해온 A대학이 재위탁 업체로 선정되자 특혜의혹 제기됨 A대학 등의 이해관계인들이 선정심의위원으로 참여했다고 주장

□ 개선방안

- ① 강원도 등 5개 시·도는 외부 위촉위원을 과반수로 구성
- ② 경남도 등 5개 시·도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 ③ 세종시는 위원회 심의안건과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들의 참여 배제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

- ④ 전남도는 시설, 장비, 비용 등이 위탁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 ⑤ 충남도 등 2개 시·도는 수탁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감사를 임의적이 아닌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근거 마련

【자치법규안】「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현 행	개선안(예시)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사유발생시마다 개별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강원도의회 의원과 도 관계공무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6조(수탁기관심사위원회 구성) ①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사유발생시마다 개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 2.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제○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신 설>

현 행	개선안(예시)
<신 설>	1. <u>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u> 2. <u>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u> 3. <u>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u> 4. <u>위원이나 위원에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u> 5. <u>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u> 6. <u>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사항인 경우</u> 7. <u>그 밖에 위원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u>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u> 제○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u>수탁기관은 조례 및 위탁계약서를 준수하고 도지사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u> ② <u>수탁기관은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 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u>

현 행	개선안(예시)
<신 설>	③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 하거나 추가로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조(위탁사무 감사)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조제○항에 따라 시정 요구 등을 해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타 기관 우수사례]

■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과 재계약 등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광주광역시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수탁기관 선정 심사
2. 수탁기관의 재계약 결정 심사
3. 수탁기관의 성과평가 실시

③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
3.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

④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내부위원은 위원 총수의 4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며, 외부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민간위탁사무 관련 공무원

7.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하며,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탁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심사에 참여하는 모든 위원들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이해충돌방지) ①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처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수탁 대상기관이거나 수탁 대상기관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수탁 대상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의대상기관에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수탁 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수탁 대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는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의견을 받을 수 있으며, 제척 또는 기피 결정여부에 대해 지체 없이 수탁 대상기관 및 해당 위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22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조례 및 제19조에 따른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도·감독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문책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1. 기업 및 투자 유치사업의 공정성 제고

평가대상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등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4조(민자유치위원회의 구성 등) ① 특별법 제143조제3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민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자유치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제주자치도의회 의원 및 제주자치도 소속공무원과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조(투자유치협의회)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투자유치 담당부지사, 부위원장은 도 투자유치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도의 실장, 본부장 또는 국장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장
4.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업무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⑥ 협의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해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투자유치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협의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이해충돌 가능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 현황

- 각 지자체는 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효율적인 국내외 기업 유치 및 지원을 위해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
- 효율적·체계적 투자유치 활동 추진을 위한 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 중요시책·투자유치 기본계획, 국내외 투자가 지원, 투자유치진흥 기금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위원장은 지자체장 또는 부지자체장이 되고, 위원은 지자체 소속 공무원과 투자유치업무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법조계·학계·금융계 등의 인사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

□ 문제점

- ① 제주도는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에 대한 자격 기준이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내·외부위원 임의 구성이 가능하고, 외부 인사를 통해 시장의 영향력이 개입될 가능성
- ② 경북도, 부산시는 위원으로서 부적격한 자에 대한 해촉 규정이 없어 위원구성의 신뢰성 훼손 우려
- ③ 경북도, 부산시는 심의 안전과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배제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부재하여 이해충돌 방지를 통한 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곤란

□ 개선방안

- ① 제주도는 투자유치위원회 내·외부위원의 자격 기준과 임명 또는 위촉 요건을 명확하게 개선
- ② 경북도 등 2개 시·도는 심신장애, 비위행위 등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거나 회피의무 위반 등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 신설
- ③ 경북도 등 2개 시·도는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위원의 참여나 부당개입 등 방지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및 절차 마련

【자치법규안 1】「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현 행	개선안(예시)
제4조(민자유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민자유치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제주자치도의회 의원 및 제주자치도 소속공무원과 <u>민간투자</u>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4조(민자유치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민자유치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제주자치도의회 의원 및 제주자치도 소속공무원과 <u>민간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제계, 법조계, 학계 등의 전문가 중에서</u>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자치법규안 2·3】「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현 행	개선안(예시)
<신 설>	<u>제○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u>

현 행	개선안(예시)
<u><신 설></u>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u>제○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u>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

현 행	개선안(예시)
	<u>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u> ③ <u>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u>

[타 기관 우수사례]

■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과학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전략사업추진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4. 그 밖에 기업유치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22. 우수기업인 등 선정기준 명확화

평가대상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우수기업인등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기업인등을 우수기업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시에서 수여하는 중소기업인대상, 물류발전대상, 자랑스러운 기업인상, 산업평화상, 우수벤처기업인상을 받은 기업인등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또는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장관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인등
3. 제6조에 따른 비전기기업 또는 향토기업
4. 시에서 선정한 유망중소기업
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기업 및 시장이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인증기업 및 시장이 친환경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7.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인 등

□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현황

- 각 지자체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조례를 운영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기업홍보, 지원사업 우선 선정, 공영주차장 및 공무원 휴양소 무료 제공 등 행정적·재정적 혜택 부여

- 국내 산업별 기업체 수는 7,295천 여 개이며, 종사자수가 21,580천 여 명, 전체 매출 규모가 5,560조 원으로 파악됨

< 국내 산업별 기업규모 현황 >

구 분	산업별 기업규모(2020년 기준)					
	계(a+b)	중소기업				대기업(b)
		소계(a)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기업수(개)	7,295,393	7,286,023	6,842,959	338,865	104,199	9,370
종사자수(명)	21,580,496	17,541,182	9,461,073	4,286,553	3,793,556	4,039,314
매출액(억원)	56,599,655	26,733,019	9,688,748	5,676,472	11,367,800	29,866,636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2.9.)

□ 문제점

- 인천시는 우수기업인 등 선정기준에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인 등”과 같이 모호한 기준을 두고 있어 선정 과정에서 재량권 남용 및 특혜 발생 소지

□ 개선방안

- 인천시는 우수기업인 등 지원대상 요건 중 “그 밖의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인 등”이라고 자의적으로 표현한 규정 삭제 또는 구체적 요건 마련

【자치법규안】 인천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선안(예시)
제3조(우수기업인등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기업인등을 우수기업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6. (생략) 7. <u>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인 등</u>	제3조(우수기업인등 선정)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기업인등을 우수기업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6. (현행과 같음) <u><삭제 또는 구체화></u>

[타 기관 우수사례]

■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제4조(대상 등)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 또는 정부, 기업 관련 기관에서 중소기업대상, 우수벤처기업인상 등 우수 기업 관련 포상을 받은 우수기업인
2. 기타 인구증가,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시에서 우수기업 관련 포상을 받은 우수기업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여받은 상장, 인증 및 지정서는 우수기업인 인증서로 갈음한다.

■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대상 등) ① 제4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군·충청북도에서 수여하는 중소기업인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

23. 지역 축제·행사 지원 적정성 제고

평가대상

축제·행사 지원 조례

■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회 의원
2. 문화예술단체 대표
3. 시민사회단체 대표
4. 축제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외부위원 참여비율, 제척·기피·회피 규정 없음

□ 평가기준 : 재량 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정 누수 가능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 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 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 현황

○ 지자체는 지역 문화재, 특산물 등을 소재로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관광산업·지역발전을 목적으로 다양한 지역축제·행사 개최

- 지자체의 각종 축제·행사는 매년 증가 추세이나 수익률은 감소 추세

※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축제·행사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재증가 예상

〈 전국 축제·행사 개최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건수 ¹	451	472	520	523	189
총부담액(A) ²	426,050	437,247	495,205	499,358	154,269
수익(B)	94,875	81,813	61,625	59,438	15,667
수익률(B/A)	22.3%	18.7%	12.4%	11.9%	10.2%

(출처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¹ 광역 5억, 기초 3억 이상 행사·축제 대상

²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합을 의미

- 광역지자체는 지자체별 축제·행사 난립을 방지하고 체계적 지역축제 육성·지원 등을 위해 **지역축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 지역축제심의위는 지역축제 **육성·지원**, 축제 **평가**, 지원대상 축제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문제점

- ① 지역축제심의위는 축제지원 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위원 구성에 객관성·공정성이 요구됨에도
 - 경남도 등 7개 시·도는 심의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 참여 비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외부위원 참여 보장이 미흡
 - 대전시, 부산시는 **위원 해촉 규정**이 없어 부적격자 배제가 곤란
 - 경남도, 전남도, 충북도는 **연임 또는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연임에 따른 부작용 우려
 - 경기도 등 6개 시·도는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없어 심의 공정성을 훼손

< 시·도별 지역축제 지원 관련 규정 현황 >

구 분	지역축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비고
	외부위원 비율	해촉	임기	제척·기피·회피	
강원도	과반 이상		회의종료 시 해체		
경기도	과반수 이상		회의종료 시 해체	없음	
경남도	없음		2년		관광정책자문위에서 심의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경북도	과반수 이상		2년, 1회 연임		
광주시	내부 1인		2년, 1회 연임		
대구시					규정 없음
대전시	없음	없음	3년, 2회 연임		
부산시	없음	없음	2년, 1회 연임		
서울시					자문기능
세종시					규정 없음
울산시	없음		2년, 1회 연임		
인천시					조례 없음
전남도	과반수		2년. 연임규정 없음		
전북도	없음		2년, 1회 연임	없음	
제주도	12명 (총 20명 이내)		2년, 1회 연임		
충남도	없음		2년, 2회 연임	없음	
충북도	없음		2년. 연임제한 없음	없음	

< 언론 사례 >

- ◆ 김○○, “위원회 대폭 정비... 일회성·선심성 행사 폐지”(22.6.23, KBS)
 - “일회성이거나 선심성인 행사 예산을 확 줄여 복지로 돌리겠다는 방침”
 - “당장, 평창 평화포럼은 재검토, 춘천 호수나라 물빛축제는 폐지 대상”
- ◆ 6년간 296억 쓴 ‘무예마스터십’ 사실상 ‘폐지’(22.7.26, 뉴데일리)
 - “도의 재정 능력을 고려하고 도민의 공감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예마스터십을 충북도가 중심이 되어 이끌어나가기에는 역부족이다.”

□ 개선방안

- ① 충청도 등 9개 시·도는 외부위원 과반수 참여 보장, 부적격 위원 해촉, 위원 임기 및 연임 제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조례에 반영

【자치법규안 1】 충청도 등 9개 시·도

현 행	개선안(예시)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되며, <u>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u> 1. ~ 4. (생략)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연임할 수 있다.</u>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되며, <u>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외부인사가 과반 이상이 되도록 한다.</u> 1. ~ 4. (현행과 같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u>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u> 2. <u>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u> 3. <u>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u>

현 행	개선안(예시)
	<u>한 경우</u> 4. <u>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 인이었던 경우</u> ② <u>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 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 결에 참여하지 못한다.</u> ③ <u>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 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 하여야 한다.</u>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u><신 설></u>	<u>제0조(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u> 1. <u>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2. <u>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u> 3. <u>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4. <u>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u>

V.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기한

□ 권고 대상기관 : 17개 광역자치단체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조치기한 : '24. 3. 31.

유 형	개선권고 과제	권고 대상기관(가나다 순)
지방의회	1. 지방의원 연구단체 활동 책임성 강화	
	①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심의 등의 공정성을 위해 위부 전문가가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경남, 광주,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전북, 충남, 충북
	② 연구활동 지원 심의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척·기피·회피 마련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③ 연구활동비 부당사용	
	- 연구활동비 목적 외 사용 금지 신설	강원, 경기, 충북
	- 목적외 사용 등 부당사용 시 환수규정 신설 또는 강행규정으로 보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④ 연구활동 사후관리 강화	
	- 결과보고서, 용역보고서, 예산사용내역서에 대한 제출 의무화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지방의회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용역보고서는 홈페이지 등 공개 규정 개선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전북, 제주, 충남, 충북
	2. 지방의원 징계 실효성 제고	
	① 징계대상 위반행위 구체화 및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 징계기준 마련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인천, 전남, 제주, 충남, 충북

유 형	개선권고 과제	권고 대상기관(가나다 순)
	② 윤리심사자문위 공정성·중립성 강화	
	- 위원 해촉, 제척·기피·회피 마련 또는 보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 시 소속 공무원 참여를 허용한 준용 규정 삭제(제외)	서울, 세종
	- 위촉위원 위촉기간 축소 또는 연임규정 삭제	충북
지방의회	3. 지방의원 외유성 국외출장 차단	
	①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강화	
	- 공무국외출장 심사 생략기준 개선 * 3인 미만 출장 심사 생략 삭제	경남
	- 허가 후 변경심사 생략기준 개선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구체화 또는 삭제	전남
	- 공무국외출장 구체적 심사기준 마련	충남
	② 공무국외출장 제한 강화	
	- 행안부 표준안에서 정한 출장제한 규 정 반영	충남
	- 행안부 표준안에서 제시한 출장 제한 사유 중 누락 된 사유 추가	전남
	③ 국외출장 심사위 구성 공정성 강화	
	- 민간위원의 외부 추천	인천, 제주, 충남
	- 민간위원 비율 확대(2/3)	세종
	- 심사위원인 의원의 본인출장 심사 배제	제주
	- 위원회 위원 9인 이상 구성	충남
	- 심사위원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 마련	강원,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세종, 인천, 전북, 충북
	④ 회의 운영 공정성·투명성 강화	
	-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2/3 이상으로 확대	세종

유 형	개선권고 과제	권고 대상기관(가나다 순)
	- 회의록 공개 규정 마련	세 종, 전 남, 충 남
	⑤ 출장목적.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출장경비 환수 근거 마련	충 남
지방의회	4. 지방의원 국내 출장비 부정수령 방지	
	① 여비 부정 수령자에 대해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가산 징수 근거 마련	경 기, 경 남, 서 울
	② 근무지 내 출장 여비가 과다 지급되지 않도록 식비 지급 규정 삭제	경 북, 광 주, 대 구, 부 산, 서 울 제 주, 충 북
지방의회	5.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투명성 제고	
	①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대한 접대비 집행기준을 조례에 반영	광 주
	②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을 기준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명시	광 주, 울 산
	③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및 환수, 징계 등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경기도의회 등 5개 시·도의회는 임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선	경 기, 경 북, 광 주, 대 구, 울 산 전 남, 충 남, 충 북
	④ 업무추진비 교육 및 점검 규정을 신설 하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교육·점검 및 부당사용 시 제재조치를 강행규정으로 개선	경 기, 경 북, 광 주, 울 산, 전 남 충 남
기관운영	6.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무제한 연임 방지	
	①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 마련	인 천
기관운영	7. 공용차량 관리 강화	
	① 임차차량도 차량 정수 관리 대상에 포함 된다는 점이 명확하도록 규정을 개선	광 주, 대 전, 울 산, 충 북
	② 차량 정수 및 운영 현황 등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	강 원, 경 남, 광 주, 대 구, 대 전 부 산, 서 울, 울 산, 인 천, 전 남 전 북
	③ 차종(용도) 변경 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종 상호간 외, 승용차 간에는 제한되도록 규정	경 기, 광 주, 서 울, 울 산

유 형	개선권고 과제	권고 대상기관(가나다 순)
	④ 공용차량 외부에 공용차량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강 원, 경 남, 울 산, 전 북, 제 주
기관운영	8. 지방공무원 출장비 부정수령 방지	
	① 국내출장 시 지급한 운임비 및 숙박비를 증거서류 제출 등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 정산하도록 개선 -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조문 내용 삭제	부 산, 전 남, 전 북
	② 출장여비의 부정수령자에 대하여 2배가 아닌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	강 원, 대 구, 부 산, 세 종, 전 남
	③ 국내 출장여비를 정액에서 실비로 지급될 수 있도록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변경 - 숙박비의 경우 실비로 지급하되, 지역별 상한선을 설정	경 남, 부 산, 전 남, 충 북
기관운영	9.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공정성 확보	
	① 공무원에 대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을 관리자급인 과장 이상으로 규정	강 원, 경 기, 경 남, 대 전, 부 산 서 울, 세 종, 울 산, 인 천
	② 포상금 지급대상이 자의적인 해석·판단 등에 따라 좌우되거나 변동되지 않도록 지급기준 중 특별한 공적 또는 특별한 노력에 대한 용어 정의 또는 부연 설명 조항 마련	인 천
	③ 포상금의 공적심사위 구성 시 심의의 공정성 담보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 참여 보장	경 남, 경 북, 광 주, 대 구, 대 전 부 산, 울 산, 인 천, 전 남, 전 북 충 남, 충 북
	④ 포상금 환수 규정 정비	
	- 거짓·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지급된 포상금 환수 규정 마련	부 산
	- 거짓·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포상금 환수 시 이자 가산 규정 마련	부 산, 전 남, 전 북
	- 행정착오로 인한 포상금 환수 시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도록 개선	강 원, 제 주
기관운영	10. 포상 대상자 적격성 제고	

유 형	개선권고 과제	권고 대상기관(가나다 순)
	① 포상 대상자 결정 시 공적심사를 임의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보완	(집행기관) 경기, 대구, 세종, 인천, 전남, 전북, 충북
		(의회) 경남, 경북, 광주, 대전,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북
	② 포상에 부적절한 자(성범죄, 음주운전 등)는 포상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 규정 마련	(집행기관) 강원, 경남, 광주, 대구, 대전, 세종, 인천, 제주, 충북
		(의회)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제주, 충남, 충북
	③ 포상 취소 절차를 마련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취소를 재량이 아닌 당연취소로 개선	(집행기관) 강원, 경남, 광주, 대구, 대전,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북
		(의회)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북
기관운영	11. 정책연구용역 관리 강화	
	① 연구용역심의위 객관성·공정성 강화	
	- 위원 해촉, 제척·기피·회피 보완	전북
	- 위촉(민간)위원 비율 과반수 이상 구성	대전, 서울, 전북, 제주, 충남
	② 용역결과 평가에 따라 결과가 불량한 용역 수행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 제재 규정 마련	대전, 전북
기관운영	12. 금고 지정·운영 투명성 제고	
	① 금고지정심의위 객관성·공정성 강화	
	- 민간전문가 비율 과반수 이상 구성	부산
	-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또는 보완	강원, 경기, 대구, 대전, 서울, 인천, 전남, 제주, 충남, 충북

유 형	개선권고 과제	권고 대상기관(가나다 순)
	② 금고지정 절차 공개성 강화	
	- 금고지정에 관한 공고 금융기관 통지 의무화	부산, 서울, 울산, 제주
	- 평가기준 교부·열람 의무화	강원, 경기,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충남
	③ 협력사업비 세입예산 편성내역 및 세출 예산으로 편성 시 집행내역까지 재정 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 규정 마련	대전, 제주, 충남
기관운영	13.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공정성 제고	
	① 위원회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참여 배제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	강원, 경남, 대구, 전남, 전북
	② 직무상 비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한 해촉 규정 신설	대전
사업추진	14. 지방행정동우회 보조금 누수 차단	
	① 상위법에 어긋나는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삭제	대전, 인천, 전북, 제주, 충남
	② 사업비 외에도 운영비(사무실 임차 등) 지원 가능하도록 한 규정 삭제	대전, 제주
	③ 보조금 환수 규정을 신설하고, 환수 여부가 재량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강행규정으로 개선	강원, 전남
사업추진	15.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심의 공정성 확보	
	①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은 임기 또는 위촉 기간에는 본인의 작품 출품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	강원, 경남, 경북, 대구, 대전,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북
	② 위원에 대한 임기 제한 규정 추가	세종
사업추진	16.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정기준 명확화	
	① 법률의 위임 사항을 고려하여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정 비율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	강원, 경남, 경북

유 형	개선권고 과제	권고 대상기관(가나다 순)
사업추진	17.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책임성 강화	
	① 부실공사 신고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정하는 등 신고기한 확대	강 원, 경 북, 부 산, 세 종, 울 산 인 천, 전 남, 충 남
	②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에서 '준공 완료된 건설공사의 경우'를 삭제	인 천
사업추진	18. 시·도립 예술단 채용·운영 공정성 제고	
	① 단원 채용 공정성 강화	
	- 지휘자 등 직책단원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도록 채용방식 개선	대 구, 대 전, 부 산, 울 산, 인 천, 충 북
	- 예술단원·사무단원·직원 공개전형 사유 중 "그 밖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제 또는 구체화	대 전
	- 예술단원·사무단원·직원 특별전형 사유 중 "단장이 추천한 자", "조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 불명확한 규정 삭제	강 원, 울 산, 제 주, 충 북
	② 예술단체 운영위원, 전형위원 운영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마련	강 원, 경 남, 경 북, 대 구, 대 전, 부 산, 세 종, 울 산, 인 천, 전 남, 전 북, 제 주, 충 북
사업추진	19.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우선계약자 선정기준 명확화	
	① 계약 우선순위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하거나 관련 규칙을 제정하여 모호한 선정기준을 정비	강 원, 전 남
	②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동일 순위자의 추천이나 객관적인 계약자 우선 선정기준을 정하여 조례에 반영	광 주, 대 구, 서 울
사업추진	20. 민간위탁 사업 투명성·책임성 강화	
	① 위촉위원의 구성비율을 확대(과반수)	강 원, 경 남, 대 전, 부 산, 제 주
	②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강 원, 세 종, 전 북, 충 남, 충 북

유 형	개선권고 과제	권고 대상기관(가나다 순)
	③ 위원회 심의안건과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 의 참여 배제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보완	세 종
	④ 수탁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임의적이 아닌 의무적으로 실 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강 원, 충 남
사업추진	21. 기업 및 투자 유치사업의 공정성 제고	
	① 투자유치위원회 내·외부위원의 자격 기준과 임명 또는 위촉 요건을 명확하게 개선	제 주
	② 비위행위를 저지른 위원 등에 대한 해촉 규정 신설	경 북, 부 산
	③ 투자유치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제고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보완	경 북, 부 산
사업추진	22. 우수기업인 등 선정기준 명확화	
	① 지원대상 요건 중 자의적으로 표현한 규정 삭제 또는 구체적 요건 마련	인 천
사업추진	23. 지역축제·행사 지원 적정성 제고	
	① 지역축제심의위 객관성·공정성 강화	
	-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참여 보장	경 남, 대 전, 부 산, 울 산, 전 북, 충 남, 충 북
	- 부적격 위원 해촉 규정 및 임기제한 규정 마련	대 전, 부 산, 전 남, 충 북
	- 제척·기피·회피 보완	경 기, 전 북, 충 남, 충 북